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박나경 예산분석관  
남명진 예산분석관  
유연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리라 행정실무원  
홍지우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2.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8

#### II. 주요 현안 분석

- 1. 밀 자급률 제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12
  - 1-1. 전략작물직불제의 전략작물 재배 확대 효과성 검토 필요 ..... 13
  - 1-2. 공공비축을 통한 가루쌀 조기 매입 계약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18
  - 1-3. 쌀가루 생산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화 지원을 추진할 필요 ..... 21

####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의 귀농·귀촌 지원 효과 제고 필요 ..... 23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27



# CONTENTS

3.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30
4.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33
5. 농산물 온라인 도매유통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36
6. 직매장 지원 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39
7.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계획 조정 필요 .....	44
8. 계란공판장 유통비 지원 종료 후 지속적인 거래량 확보 가능성 점검 필요 .....	47
9. 데모온실 조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 .....	50
10.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한 예산 세부내역 편성 필요 .....	53

## [해양수산부]

###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	5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6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65

## II. 주요 현안 분석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필요 ..... 71
2. 수산물 수급안정 관련 사업 성과 분석 및 관리 철저 필요 ..... 78
  - 2-1.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의 가격 인하 효과 분석 및  
사업성과분석을 반영한 사업관리 필요 ..... 79
  - 2-2. 수매지원·비축사업의 탄력적 사업 관리 필요 ..... 83

## III. 개별 사업 분석

1. 어촌뉴딜300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87
2.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등 ..... 94
3.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의 사업계획·관리 강화 필요 ..... 99
  - 3-1. 소규모어가 등 직불제 사업지침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필요 ..... 101
  - 3-2.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료지원단가 검토 필요 ..... 105
4.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이차보전액 부족분 발생  
방지 필요 ..... 108
5. 해양모태펀드 사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 ..... 113
6.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단가 예측 현실화 필요 ..... 117
7.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122

## [농촌진흥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12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3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33

### II. 개별 사업 분석

- 1.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35
- 2.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농업 기계화율  
제고 필요 ..... 141

## [산림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14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5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52

## II. 개별 사업 분석

1.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 154
2.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157
3. 스마트 양묘시스템 시설운영비 편성 규모 검토 필요 ..... 160

### [해양경찰청]

##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 16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6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67

## II. 개별 사업 분석

1. 유도선 현대화 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169
2. VTS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172





**농림축산식품부**



## 1

##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3조 486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4,647억원(3.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1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조 1,95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3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4,321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3,274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9,636억원, 축산발전기금 5,676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90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284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60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3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2578383	7,501,852	7,501,852	7,706,374	204,522	2.7
- 일반회계	5,420	20,710	20,710	21,170	460	2.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82675	6,981,189	6,981,189	7,195,835	214,646	3.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590	42,949	42,949	42,929	△20	0.0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46	-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415	15,005	15,005	14,332	△673	△4.5
- 양곡관리특별회계	1,140,237	441,999	441,999	432,108	△9,891	△2.2
기 금	4,989,440	5,082,074	5,082,074	5,342,263	260,189	5.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38,522	2,429,311	2,429,311	2,327,368	△101,943	△4.2
- 농지관리기금	2,046,324	1,611,796	1,611,796	1,963,623	351,827	21.8
- 축산발전기금	594,484	567,207	567,207	567,593	386	0.1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2,783	4,490	4,490	8,990	4,500	100.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97,920	425,937	425,937	428,386	2,449	0.6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8,911	43,046	43,046	46,016	2,970	6.9
- 양곡증권정리기금	496	287	287	287	-	-
합 계	17567823	12583926	12583926	13048637	464,711	3.7

주: 일반수입 기준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7조 2,785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829억원(2.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51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3,71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62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3,246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1,879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8,118억원, 축산발전기금 9,441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조 7,235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518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706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593,162	8,806,125	8,775,695	9,188,776	413,081	4.7
-일반회계	683,538	737,041	731,048	751,599	20,551	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173,875	5,051,655	5,082,218	5,371,136	288,918	5.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5,132	22,051	22,051	15,150	△6,901	△3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0,716	752,558	752,558	726,243	△26,315	△3.5
-양곡관리특별회계	1,959,901	2,242,820	2,187,820	2,324,648	136,828	6.3
기 금	7,947,373	8,070,570	8,119,928	8,089,708	△30,220	△0.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01,620	2,429,445	2,529,203	2,187,889	△341,314	△13.5
-농지관리기금	1,715,470	1,794,280	1,774,280	1,811,846	37,566	2.1
-축산발전기금	1,027,252	962,173	939,873	944,090	4,217	0.4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2,371,177	2,394,284	2,394,284	2,723,532	329,248	13.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1,255	389,791	381,691	351,755	△29,936	△7.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0,599	100,597	100,597	70,596	△30,001	△29.8
-양곡증권정리기금	-	-	-	-	-	-
합 계	16,540,535	16,876,695	16,895,623	17,278,484	382,861	2.3

주: 일반지출 기준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5조 9,564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조 192억원(△6.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조 5,53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3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3,246억원이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089	20,710	20,710	21,170	460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989,705	12,388,358	14,709,161	13,553,360	△1,155,801	△7.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590	42,949	42,949	42,929	△20	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415	15,005	15,005	14,332	△673	△4.5
양곡관리특별회계	2,785,858	2,242,820	2,187,820	2,324,648	136,828	6.3
합 계	19,831,702	14,709,842	16,975,645	15,956,439	△1,019,206	△6.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조 6,053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조 5,413억원(8.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4,55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조 83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62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3,246억원이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973,569	5,794,324	3,319,596	5,455,786	2,136,190	64.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628,772	10,485,487	12,782,016	12,083,466	△698,550	△5.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5,132	22,051	22,051	15,150	△6,901	△31.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5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0,716	752,558	752,558	726,243	△26,315	△3.5
양곡관리특별회계	2,059,901	2,242,820	2,187,820	2,324,648	136,828	6.3
합 계	19,438,135	19,297,240	19,064,041	20,605,293	1,541,252	8.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조 6,727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7,183억원(6.6%)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3,274억원, 농지관리기금 3조 7,220원, 축산발전기금 1조 628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조 8,175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은 1조 1,419억원이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22,826	2,584,159	2,893,917	2,327,368	△566,549	△19.6
농지관리기금	2,796,174	3,278,386	3,279,946	3,721,984	442,038	13.5
축산발전기금	1,058,777	1,044,546	1,022,246	1,062,803	40,557	4.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418,568	2,422,186	2,422,186	2,817,496	395,310	16.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72,074	472,139	464,039	510,734	46,695	10.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7,645	145,032	145,032	90,451	△54,581	△37.6
양곡증권정리기금	225,587	727,051	727,051	1,141,884	414,833	△57.1
합 계	9,571,651	10,673,499	10,954,417	11,672,720	718,303	6.6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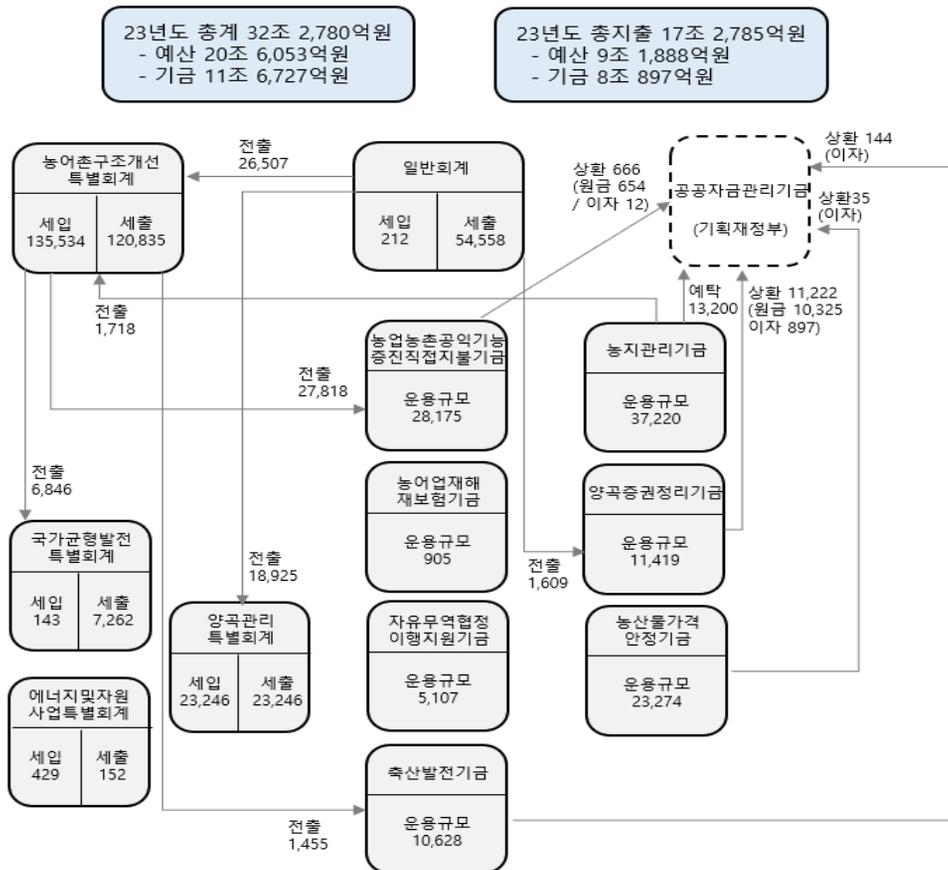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조 6,50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8,925억원이 전출되며, 양곡관리정리기금으로 1,609억원이 전출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6,846억원이 전출되고,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7,818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55억원 전출된다.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 1,718억원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3,200억원을 예탁한다.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54억원의 예수원금, 12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고, 축산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각각 144억원, 35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양곡증권관리기금은 1조 325억원의 예수원금 및 897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농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7조 2,785억원으로 농가소득·경영안정(13.3%), 식품(5.6%), 농촌복지·지역개발(2.6%) 분야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재해대책·기반정비(△5.3%), 혁신성장·체질강화(△3.2%), 양곡관리·유통혁신(△0.8%) 분야는 감소하였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농촌보급자리 입주요건이 지역별로 상이하어 일부 지역의 경우 관내 거주자의 입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귀농·귀촌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 입주요건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2022년도 농어촌 특별세 초과수납분 규모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농어촌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농어촌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편성된 1차년도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 216억원 7,400만원 규모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완화와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 기술개발·보급 및 사업 추진 등 전문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을 통해 생산·출하·유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은 고품질·고성능의 농기계 개발을 위해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실증데이터분석실 및 장비 도입 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반려동물 산업육성’ 사업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R&D 분야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발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등 현장수요 기반의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개발(R&D)’ 사업은 타 분야 선도 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은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장 맞춤형 상품 개발,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신규사업인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은 가루쌀 산업육성을 위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가루쌀 제품 개발 및 유통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수급 조절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7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2,135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정보화)	80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927
	반려동물산업육성	400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4,875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R&D)	750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4,407
양곡관리 특별회계 (1개)	쌀가루산업화지원	7,100
합 계		21,6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등이 있다.

①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과거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은 신선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은 공장 등 유해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농림축산검역본부기본경비	2,428	2,358	3,175	747	30.8
	종자원기본경비	183	183	244	61	33.3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근무요원운용	23	23	36	13	56.5
	청사시설지원(종자원)	1,012	1,012	1,758	746	73.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2개)	농업재해보험	685,673	632,413	730,922	45,249	6.6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59,647	359,647	401,754	42,107	11.7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강한 식생활 확산	45,207	84,207	114,732	69,525	153.8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32,708	32,708	83,079	50,371	154.0
	노지분야스마트 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12,226	12,226	16,300	4,074	33.3
	디지털융종전환 기술개발(R&D)	10,050	10,050	13,395	3,345	33.3
	친환경동력원적용 농기계기술개발(R&D)	7,341	7,341	9,788	2,447	33.3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R&D)	6,722	6,722	8,960	2,238	33.3
	스마트농산물 유통저장기술개발(R&D)	5,829	5,829	7,772	1,943	33.3
	축산물허용물질 목록제도 지원	3,070	3,070	4,097	1,027	33.5
	가축질병대응 기술고도화지원(R&D)	11,180	11,180	15,071	3,891	34.8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3,050	3,050	4,142	1,092	35.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8,899	38,899	55,106	16,207	41.7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24,334	24,334	34,518	10,184	41.9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2,825	2,825	4,168	1,343	47.5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1,769	1,769	2,610	841	47.5
	임대형 스마트팜	41,000	41,000	61,500	20,500	50.0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535	2,535	3,806	1,271	50.1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800	800	4,800	4,000	500.0
	농업자금이차보전	280,299	291,367	451,942	171,643	61.2
	스마트유통단지기반조성	3,273	3,273	5,935	2,662	81.3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	180,099	100,000	100,000	순증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3개)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2,840	2,840	7,459	4,619	162.6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4,693	4,693	7,041	2,348	50.0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117	1,117	2,137	1,020	91.3
양곡관리 특별회계 (3개)	수입양곡대	432,694	432,694	554,896	122,202	28.2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5개)	비축지원	562,021	616,579	686,550	124,529	22.2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용자)	402,882	402,882	458,446	55,564	13.8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45,590	45,590	55,635	10,045	22.0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1,200	1,200	4,862	3,662	305.2
	도매유통활성화지원	855	855	1,149	294	34.4
농지관리 기금 (3개)	맞춤형농지지원(용자)	812,314	812,314	857,726	45,412	5.6
	농지연금(용자)	210,568	210,568	228,237	17,669	8.4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4,842	4,842	40,418	35,576	734.7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2개)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7,202	7,202	20,559	13,357	185.5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173	173	226	53	30.6
농업농촌 공익기금 (1개)	공익기능증진직불	2,360,984	2,360,984	2,686,784	325,800	13.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밀 자급률 제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1월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밀 수요량은 연간 210만~220만 톤 수준이나, 국내 생산량은 2만 톤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 밀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밀 자급률 목표를 2020년 기준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 수준으로 올리고,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sup>1)</sup> 등을 통해 밀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1~2022년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밀 선물가격도 2020년 178\$/톤에서 2022년 5월 457\$/톤으로 상승<sup>2)</sup>하는 등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밀 수급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밀 자급률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식제분이 가능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밀가루를 대체하는 동시에 쌀 수급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2022.6.)하기도 하였다.<sup>3)</sup>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651)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밀 비축물량을 2021년 대비 8,400 톤 증가한 1만 4,000 톤까지 확대하여 국산 밀 생산·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산 밀 정부 비축 대폭 늘린다!’, 2022.3.15.)

2) [밀 선물가격]

(단위: US\$/톤)

'19년	'20년	'21년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1	178	251	290	306	405	413	457	400

자료: KCBT No2 경질밀 월별 평균 가격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식량안보 강화, 쌀 수급균형 달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2.6.9.)

## 1-1. 전략작물직불제의 전략작물 재배 확대 효과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공익기능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sup>4)</sup>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정(2019.12.31.)에 따라 기존 6개의 직불사업<sup>5)</sup>을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이원화하여 통합시킨 것이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규모 농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에게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등의 규모 구간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sup>6)</sup>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축산직불’,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원하는 ‘농촌경관직불’, 조사료·밀·분질미·콩 등 식량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로 구성된다.

4) 코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1071-302

5) 쌀(고정·변동),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

6) [면적 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 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0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익기능증진직불	2,339,968	2,360,984	2,360,984	2,686,784	325,800	13.8
기본형 공익직불	2,258,033	2,280,487	2,280,487	2,580,487	300,000	13.2
선택형 공익직불	81,935	80,497	80,497	106,297	25,800	32.1
전략작물직불	47,300	46,200	46,200	72,000	25,800	55.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선택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축산 직불제와 농촌경관직불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전략작물직불제의 경우 전년 대비 258억원 증액된 72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동계작물 재배 농가에 ha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논활용직불’ 사업을 확대하여 동계작물로 조사료·밀을 재배(ha당 50만원)하거나 하계에 콩·가루쌀을 재배(ha당 100만원)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며, 각각의 동계·하계 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ha당 250만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직불 세부 산출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예산 규모	산출내역	예산 규모	산출내역
46,200	동계작물 지원 (산출) 92,400ha × 50만원/ha = 46,200백만원	72,000	동계작물(밀·조사료) 지원 (산출) 88,000ha × 50만원/ha = 44,000백만원 하계작물(가루쌀·콩) 지원 (산출) 8,000ha × 100만원/ha = 8,000백만원 동계-하계 이모작 (산출) 8,000ha × 250만원/ha = 20,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밀 자급률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밀 재배 직불금은 ha당 5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쌀 재배 대체효과가 불분명한 하계작물(가루쌀·콩) 재배에 대한 직불금 단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한 직불금 단가 수준이 각각의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한 국산 밀 생산 목표에 비해 실제 밀 재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밀 재배 확대를 위한 농가 유인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0.11월)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를 달성하고 추후 제2차(2026~2030) 기본계획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밀 자급률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2022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022.6월)에 따르면, 밀의 재배면적은 2020년 5,224ha, 2021년 6,224ha, 2022년 8,259ha로 2022년 기준으로 밀 재배면적 목표 1만 5,000ha 대비 6,741ha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 밀 재배면적이 기본계획에 따라 확대될 수 있도록 밀 재배에 대한 적극적 생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산 밀 생산 관련 계획 및 실적]

(단위: ha, %, 천톤)

구 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재배면적(A)	5,224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자급률	1.0	1.7	2.5	3.3	4.2	5.0
	생산량	21	40	60	80	100	120
실적	재배면적(B)	5,224	6,224	8,259	-	-	-
차 이(A-B)		0	3,776	6,741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0.11월)  
 통계청 「2022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022.6월)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하계작물(가루쌀·콩)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쌀 재배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지만, 쌀 재배가 콩 재배에 비해 면적당 수익이 높고, 가루쌀이 신규 재배되는 만큼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쌀값 폭락 등 쌀 생산과 수급 간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농촌에 쌀을 대체하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하계작물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논벼의 10a당 순수익은 44만원 수준이나, 콩의 10a당 순수익은 15만원 수준으로, 1ha당 논벼가 콩 재배에 비해 약 290만원의 순수익을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논벼 및 콩 생산비 및 소득 현황]

(단위: 원/10a)

작물	총수입 (A)	생산비 (B)	순수익 (A-B)
논벼	1,216,248	773,658	442,591
콩	809,514	657,986	151,5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1.11.

그리고 가루쌀 재배와 관련하여서도 '바로미2' 품종은 일반벼에 비해 수발아<sup>7)</sup>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재배 시기 등 바로미2 권장 농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재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벼 재배 농가에서 가루쌀을 대체 재배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0년 쌀 수급균형을 위해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sup>8)</sup>을 추진한 바 있는데, 2018~2019년 참여한 농지 중 2020년도에도 타작물재배를 계속하는 농지는 참여농지의 45.1%에 불과하고, 참여농지의 54.9%에 해당하는 농지는 다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9)</sup>

7) 수발이란 종자가 이삭에 붙은 채로 썩어 나는 현상을 의미

이처럼 작물 간 수입-생산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논벼 외 작물 재배의 기계화 확대, 재배기술의 향상 등 근본적인 작물 간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 한 직불금 지급에 따른 쌀 재배 대체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 [2020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현황]

구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
대상지역	진흥·비진흥지역 논 모두 포함 2019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신규 참여 농지 2018~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
대상작물	조사료·꽃거름·두류 등 작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 현황]

(단위: ha)

신규 참여면적	계속 참여면적	이탈면적
47,968	21,646	26,3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2. 공공비축을 통한 가루쌀 조기 매입 계약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정부양곡매입비 사업<sup>10)</sup>은 공공비축양곡, APTERR<sup>11)</sup> 이행용 양곡의 비축과 양곡 수급조절 및 시장격리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의 결손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2억 3,000만원 감액된 1조 4,07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정부양곡매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양곡매입비	1,188,269	1,428,958	1,428,958	1,407,728	△21,230	△1.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루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3~5월 농가별로 가루쌀(분질미)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수확기에 농가가 생산한 가루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고자 하는 실수요업체에 특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0

11)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협정: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식량부족, 기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별로 쌀을 사전에 비축하고 비상시 상호 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제도를 말한다.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2. 산업화 지원

◇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한 분질미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식품·제분업계에 시료 제공,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전략 제품을 개발한다.

첫째, 정부는 매년 3~5월에 농가별로 분질미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수확기에 농가가 생산한 분질미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이를 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고자 하는 실수요업체에 특별 공급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6.

나. 분석의견

가루쌀 모내기 이전에 조기에 공공비축미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양곡관리법」상 규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은 매년 8월말 경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매년 3~5월 농가별로 가루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양곡관리법」상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양곡관리법」<sup>12)</sup>에 따르면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8월말 경 국무회의를 통해 당해연도에 생산된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결정된 매입량 및 매입가격을 기반으로 매입을 실시한다. 특히, 2022년도의 경우 쌀값 하락세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5만톤 수준으로 매입하던 공공비축미 물량을 10만톤 확대하기도 하였다.<sup>13)</sup>

12) 「양곡관리법」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 추진」, 2022.9.1.

이처럼 공공비축미는 식량 안보 뿐만 아니라 양곡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매입가격 및 매입량이 결정된다.

하지만 3~5월경 가루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한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확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양곡수급계획상 가루쌀 비축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매입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루쌀은 비상 시 밀 대신 활용 가능한 작물로, 공공비축 매입이 필요하며, 3~5월 체결하는 매입 계약은 생산 농가에 대한 관리계약으로 실제 매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밀 자급과 관련한 공공비축은 국산 밀 비축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매입이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수확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매입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루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매입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상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3. 쌀가루 생산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화 지원을 추진할 필요

#### 가. 현 황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sup>14)</sup>은 쌀가루를 활용하는 제조업체에게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편성하였다.

쌀가루 산업 소비판로 지원 사업<sup>15)</sup>은 쌀가루 시장 육성을 위해 빵집 등 즉석 판매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쌀가루 활용 제품 개발,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2023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쌀가루 산업화 지원	-	-	-	7,100	7,100	순증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	-	-	2,500	2,500	순증
쌀가루 산업 소비판로 지원	-	-	-	1,500	1,5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쌀가루 산업 소비판로 지원’ 사업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을 지급할 계획이다.

[쌀가루 산업화 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2,5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20-01목)
  - 밀가루 대체 제품 개발 : 15개×200백만원×80% = 2,400백만원
  - 사업운영, 소비자 평가 등 : 100백만원
- 쌀가루 산업 소비판로 지원 1,5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20-01목)
  - 시제품 개발, 마케팅·홍보 지원 : 20개소×40백만원
  - 팝업스토어 운영 : 5개소×14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4)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70의 내역사업

15)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70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가루쌀 재배면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쌀가루를 활용한 제품개발·홍보 지원 등 가공·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2022년 기준 가루쌀 생산 면적은 100ha, 생산량은 475톤 수준으로 연간 밀가루 수요량 200만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0.02%)인 상황인데,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6년까지 가루쌀 재배면적을 4만 2,000ha, 생산량을 2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sup>16)</sup>이다.

2023년도부터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2022년도에 생산된 가루쌀을 원료로 하여 제품 개발 및 소비판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아직 생산물량이 적은 가루쌀을 활용하여 산업화 지원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 품종이 아닌 일반 쌀을 습식제분하여 생산한 쌀가루를 원료로 하여 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가루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가루쌀을 이용하여 제분부터 제품개발 및 가격 설정까지 수행하는 것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면적을 우선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16) 분질미(가루쌀) 목표 재배면적

(23) 2,000ha → (24) 5,300ha → (25) 15,800ha → (26) 42,100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III

## 개별 사업 분석

1

###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의 귀농·귀촌 지원 효과 제고 필요

#### 가. 현황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sup>1)</sup>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독·쉐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원 증액된 4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5,710	800	800	4,800	4,000	50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통해 50%를 지원하는데, 2022년 선정지구 1개소(밀양) 2년차 사업비 국비 16억원과 2023년도 신규 선정 예정지구 4개소 1년차 사업비 국비 32억원이 편성되었다.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예산안 편성 내역]

- 22년 선정 1개 지구 : 8,000백만원×2년차 40%×1개지구×보조율50% = 1,600백만원
- 23년 신규 4개 지구 : 8,000백만원×1년차 20%×4개지구×보조율50% = 3,2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60-433

##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입주요건 중 관외 거주요건 인정범위가 지역별로 상이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관내 거주자 입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통 입주요건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입주자를 모집한 4개 지역의 신청요건을 살펴보면, 4개 지역 모두 해당 지역 밖(관외)에서 거주하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귀농·귀촌을 인정하기 위한 관내 거주 최대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괴산군은 관외에 거주하다 관내로 이주한지 2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고, 서천군과 상주시의 경우 관외에 거주하다 관내로 이주한지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여 귀농·귀촌을 인정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지역별 입주요건 현황]

지역	관외거주 요건		관내거주자 신청 가능여부	
		도시지역 거주요건		관외거주자 인정 기간
괴산군	O	X	O	2년
서천군	O	X	O	5년
고흥군	O	X	X	-
상주시	O	X	O	5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그 결과 관내 거주자가 청년농촌보금자리로 입주한 비중이 상주시<sup>2)</sup>의 경우 52%로 나타났고 서천군의 경우에는 34.5%로 나타났다.

한편, 관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동 단위) 거주자 여부가 4개 지역 모두 입주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4개 지역 모두 농촌지역(읍·면 단위)에서 거주하다가 입주를 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2) 다만, 상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관내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귀촌으로 인정하였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세대수 현황]

(단위: 명, %)

지역	전체 세대수	입주세대수 (계약완료 포함) (A)	관외 세대수		관내 세대수 (B)	관내 거주 비율 (B/A)
			동	읍·면		
괴산군	36	35	19	10	6	17.1
서천군	29	29	14	5	10	34.5
고흥군	30	30	22	8	-	0
상주시	28	25	11	1	13	5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관내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청년농촌보금자리로 입주하게 될 경우 단순히 청년농촌보금자리가 농촌지역의 거주지를 대체하는 효과로 발생하여 귀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사업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주요건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귀농·귀촌의 인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귀농·귀촌인을 입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귀농·귀촌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한 사업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대상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의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에 단독주택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리츠<sup>3)</sup>가 LH 소유 공동주택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각각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LH공사의 귀농·귀촌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목적상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급호수 중 일부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유사한

3) 리츠(REITs)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측면이 있다.

특히, LH 공사의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은 보성시 운곡리와 상주시 양정리를 대상지로 선정한 상황인데,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2019년도에 상주시 사벌국면을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귀농·귀촌 주택개발 관련 사업 간 비교]

사업명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사업
사업 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LH공사	민간사업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 청년(만 40세 미만) 임대주택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인 임대주택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H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 매입 후 건설 및 분양</li> </ul>
선정(계획) 지역	충북괴산, 충남서천, 전남고흥, 경북상주, 경남밀양	전남보성, 경북상주	전남구례, 경남하동
입주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외지역 거주</li> <li>청년 세대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 공고일 기준 관외(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중</li> <li>일부 청년 우선공급</li> </ul>	건설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및 LH공사 홈페이지 공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LH공사는 귀농·귀촌 주택개발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귀농·귀촌 수요<sup>4)</sup>를 고려한 주택개발 사업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도별 청년층(30대 이하) 귀농가구주 현황]

(단위: 명)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2019	117	87	81	128	160	244	204	117	1,138
2020	165	78	94	162	200	265	186	128	1,278
2021	168	87	86	175	183	270	268	165	1,402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가. 현 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된다.<sup>1)</sup>

각각의 계정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세입<sup>2)</sup>으로 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sup>3)</sup>는 농특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예산에 계상된 규모보다 더 많이 수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sup>4)</sup>으로 계상되며, 2023년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6,754억 6,100만원이 감소한 4,34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년도 잉여금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년도 세계잉여금	2,202,143	-	2,110,000	434,539	△1,675,461	△79.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이하 생략)
-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 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89-893

##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의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2022년도 농어촌특별세 초과수납분 규모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농어촌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주식거래세 등 주요 세입원의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추계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액, 종합부동산세액, 조세감면액 등을 재원<sup>5)</sup>으로 하여 수납된다.

농어촌특별세는 2019년도까지는 예산 및 수납액이 4조원대였으나,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6조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액이 수납되면서, 약 1조 5,885억원이 초과수납되었고, 2021년도에는 약 9조원의 세입이 수납되어 약 2조 5,097억원이 초과수납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sup>6)</sup>에 따르면 2023년도 농어촌특별세 수납액은 7조 4,41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2년에도 농어촌특별세 예산 대비 약 7,612억원의 초과수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5)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30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6) 기획재정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보도자료, 2022.8.30.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어촌특별세		
	예산 <sup>1)</sup> (A)	수납 (B)	초과수납(B-A)
2019	4,179,900	3,918,234	△261,666
2020	4,671,111	6,259,604	1,588,493
2021	6,390,300	8,899,997	2,509,697
2022	6,680,200	7,441,400 <sup>2)</sup>	761,200
2023	6,988,000	-	-

주. 1)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2) 기재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전망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더욱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2021년 및 2022년도 각각 2조원 규모의 증액 경정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안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7)</sup>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 및 수납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율 (B/A)
	본예산	추경 (A)				
2021	-	2,202,143	2,202,143	2,202,143	2,202,143	100.0
2022	-	2,110,000	2,110,000	-	-	100.0
2023(안)	434,539	434,539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증권거래대금 및 부동산 거래실적 등 자산거래 감소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수납실적이 전망보다 저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3조 1,004억 4,400만원이 전출되면서 동시에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조 6,507억 4,500만원이 전입될 예정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 수정시 구조개선사업계정 일반회계전입금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 현황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은 농촌 난개발을 복원하고,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3억 7,100만원 증액된 83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sup>1)</sup> 사업은 주거환경 및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공장·축사 등을 이전·집적화 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5억원 증가한 73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3,100	32,708	32,708	83,079	50,371	154.0
농촌공간정비	2,500	32,000	32,000	73,500	41,500	129.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시·군을 선정하여 5년 동안 연차별로 유해시설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보상비 등을 지원하며, 개소당 사업비 140억원 규모로 2021년도에는 5개 시·군, 2022년도에는 40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비를 100억원 규모로 감축하여 4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60-431의 내역사업

[농촌공간정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21년 선정 5개 지구 : 14,000백만원×3년차 33%×5개 시·군×보조율50% = 11,500백만원
- 22년 선정 40개 지구 : 14,000백만원×2년차 15%×40개 시·군×보조율50% = 42,000백만원
- 23년 선정 40개 지구 : 10,000백만원×1년차 10%×40개 시·군×보조율50% = 20,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도 수립한 사업계획 대비 2년차·3년차 비중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1년차·2년차 사업의 예산 실질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경한 사업계획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농촌공간정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5년간 일정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년차와 2년차는 동일하게 사업비의 10%를 투자하고, 3년차 20%, 4년차 35%, 5년차 25%의 비율로 투자된다.

그런데 2023년도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선정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1년차)로 예산이 산정되었지만, 2021년도 선정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33%(3년차), 2022년도 선정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5%(2년차)로 연부율이 당초 계획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차 사업에 축사·공장의 이전에 따른 매입비와 보상비가 소요되어 연차별 투자 비율을 2년차의 경우 15%, 3년차의 경우 25%로 조정한 것이며, 2021년 선정지구(3년차)의 투자비율 33%는 변경된 투자 비율 대비 1·2년차에 지급하지 못한 보조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선정 지구별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2022년 8월말 기준 2021년도 선정지구의 1년차(2021년) 사업비 실질행률은 65.2% 수준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고, 2년차(2022년) 사업비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선정지구의 경우 8월말 기준 계획한 40개 지구 중 11개 지구가 선정된 상태로 1년차(2022년)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sup>

[농촌공간정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계획	사업비	1,400 (10%)	1,400 (10%)	2,800 (20%)	4,900 (35%)	3,500 (25%)	14,000 (100%)
	국비(50%)	700	700	1,400	2,450	1,750	7,000
편성	21년 선정지구	500 (7%)	700 (10%)	2,310 (33%)	-	-	7,000 (100%)
	실집행률	65.2%	0%	-	-	-	-
	22년 선정지구	700 (10%)	1,050 (15%)	-	-	-	7,000 (100%)
	실집행률	0%	-	-	-	-	-
	23년 선정지구	500 (10%)	-	-	-	-	5,000 (100%)

주. 2021년 선정지구의 2년차, 2022년 선정지구의 1년차(2022년에 집행) 집행률은 2022년 8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1·2년차 사업지구의 예산 실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을 볼 때, 사업 초기의 연도별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 예산 집행 가능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각 시·군에서 1년차에 농촌공간정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공장·축사 이전과 관련한 협의와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부율을 당초 계획 대비 상향 조정한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조한 실집행률 실적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 공모 등 절차가 늦어졌으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가. 현황

농식품모태펀드 사업<sup>1)</sup>은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인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4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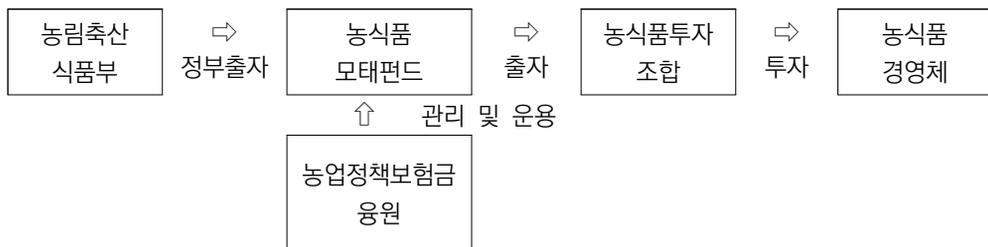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식품모태펀드	40,000	40,000	40,000	40,000	-	-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출자를 통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는 모태펀드(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한 뒤 민간자금과 일정 비율의 매칭을 통해 자펀드인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조합은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실시한다.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자유무역이행지원기금 1151-300

## 나. 분석의견

자펀드 청산 등에 따른 모태펀드로 회수된 출자금이 자펀드로 재투자되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펀드 결성액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농식품경영체 투자처 발굴 등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자펀드 존속기간을 원칙상 8년으로 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종료된 자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로 회수되어 자펀드를 결성하는 출자금으로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을 통해 출자되는 규모보다 자펀드 청산 등에 따라 회수되어 재투자되는 출자금 규모가 더 큰 상황인데, 출자금 규모는 2018년 32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2년 8월 기준 846억원 규모이고 정부 신규출자까지 포함하여 2022년도에는 총 1,246억원이 출자되었다.

한편, 모태펀드 출자금은 현재 모두 민간출자금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결성하고 있어 자펀드 결성실적은 높지만 자펀드 투자 실적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말 기준, 2019년까지 결성된 자펀드는 결성총액 중 투자된 비율이 89%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2020년 결성 자펀드는 투자율이 49.8%로 급감하였고, 2021년 결성된 자펀드는 투자율이 35.4%인 상황이다.

[농식품모태펀드의 자펀드 조성·투자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sup>1)</sup>	
	정부출자	재투자액	출자총액	정부출자	민간출자	결성총액	투자액	투자율
2018	100	320	420	420	305	725	649	89.5
2019	200	300	500	500	480.5	980.5	874	89.1
2020	350	390	740	740	767	1,507	750	49.8
2021	400	467	867	867	811.44	1,678.44	595	35.4
2022.8월	400	846	1,246	1,246	564	1,810	15	0.8

주. 1) 투자액은 2022년 8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모태펀드 재투자액이 증가하면서 자펀드 결성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에도 400억원의 정부출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한 상황인데, 증가하는 모태펀드 출자총액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도매거래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2020년부터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동 거래소는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요 산지 출하처들이 상품이미지와 거래 관련 정보를 온라인시스템에 올리면, 공판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이를 구입하고 산지에서 직접 배송받는 시스템<sup>1)</sup>이다.

2023년 예산안에는 온라인 거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농산물 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sup>2)</sup> 48억 6,200만원과 농산물 온라인 도매 유통과정에서의 결제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sup>3)</sup> 3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지원 관련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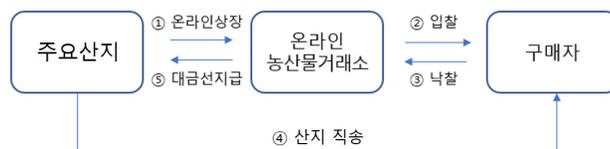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산물 온라인거래활성화	600	1,200	1,200	4,862	3,662	305.2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73,097	105,000	105,000	109,000	4,000	3.8
농산물 온라인거래활성화	-	30,000	30,000	35,000	5,000	16.7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유통단계]



자료: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2)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3-360

3)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3-305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오프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온라인 유통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산지 출하처에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에 등록된 농협공판장을 통해 출하등록을 하면 구매자가 입찰 또는 정가 구매요청을 하고, 배송이 이루어지면 공판장에서 해당 거래를 확정한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방식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동법 제46조 및 제35조제2항<sup>4)</sup>에 따르면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물품을 공판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출하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공판장에 물품을 출하하지 않더라도 구매자와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① 「농안법」<sup>5)</sup>상 공판장 거래 관계자(중도매인, 출하자 등)는 공판장이 지정하거나 공판장에 등록해야하는데, 온라인 회원가입 방식을 통한 공판장 거래 관계자 지정 및 등록 방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고, ②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sup>6)</sup>에 따르면 경매사가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

###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여야 하는데,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출하처와 구매자 간에 경매를 실시하고 배송이 완료되면 경매사가 이를 확정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도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며, ③ B2B 온라인거래 플랫폼으로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모호한 상황이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운영은 농업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상황이므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감축 등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7)

6)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p>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p>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및 도매시장 거래 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li> </u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가. 현황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사업<sup>1)</sup>은 농촌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3,100만원 증액된 36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내역사업인 ‘직매장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5,000만원 감액된 6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내역사업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억원 증액된 19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돌봄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 내 사회적 약자의 자립 및 사회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거시설, 공유농장, 기초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50%)을 3개년 간 지급하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2개소(전남 화순·경북 성주) 2년차 사업비 85억원과 신규 1개소 1년차 사업비 6억원 등 총 91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농촌사회적가치 확산지원	22,258	31,652	31,652	36,683	5,031	15.9
직매장 지원	6,905	8,700	8,700	6,050	△2,650	△30.5
사회적 농업 활성화	3,785	8,202	8,202	19,302	11,100	135.3
돌봄마을 조성	-	1,200	1,200	9,100	7,900	65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35-394

## 나. 분석의견

첫째, 복합직매장 건축의 추진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을 2개년으로 의무화하였으나, 연부율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신청자의 연차별 신청 금액을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집행 실적 개선 효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합직매장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년 차 연부율을 2년차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직매장 지원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매장의 건축·감리 예산을 지원하다가 2021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하여 카페·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직매장' 건축 등도 지원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직매장 지원 사업의 지자체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52.4% 수준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경우 8월말 기준 10.6% 수준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매장 지원 사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0	4,200	4,200	3,617	7,817	5,610	1,030	1,177	71.8
2021	7,200	7,200	1,030	8,230	4,310	3,048	872	52.4
복합매장 지원	3,000	3,000	-	2,450	384	1,516	550	15.7
2022.8월	7,200	7,179	3,048	10,248	1,084	-	-	1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직매장 유형별 지원방식]

구분	지원규모	내 용
일반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비 개소당 최대 3억)	-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도농상생형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비 개소당 최대 5억)	- (유형①) 도시지역에 건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직매장을 직접 운영 - (유형②) 도시지역에 설치하되, 도시는 장소제공,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국비 개소당 최대 6억)	-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직매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일반 직매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복합매장의 경우 지방비 확보 문제, 인허가 등 사업계획 지연에 따라 2021년도 실적행률이 15.7%, 2022년 8월까지의 실적행률이 18.2%로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3)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에서도 연례적으로 실적행이 저조한 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특히 일반직매장에 비해 지원금액 및 규모가 크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로컬푸드복합센터의 경우 실적행률이 낮은 측면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2022.9월)에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지원기간을 기존에 신청자가 1~2년 사업기간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2년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예산 집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청한 연차별 예산 규모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자별 편성된 연부율이 각각 상이한데, 1년차에는 주로 설계비가 소요되어 2년차에 비해 공사비 소요가 낮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에 비추어볼 때 1년차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1년차 연부율을 2년차에 비해 낮게 설정해야 할 것이나, 2년차에 비해 1년차 사업비가 더 많이 편성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개년 사업 편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1년차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여전히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공모 시 최소한의 연부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2021년 선정 로컬푸드 복합센터 사업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직매장명	2021 예산	2021 집행액	2022 집행액	착공일	완공일	오픈 예정일
지도농협 직매장	600	300	0	'21.11	'22.8	'22.8.
태안군 직매장(1년차)	50	0	14	-	'22.12	'23.9.
부안군 직매장(1년차)	50	50	0	-	'22.12	'23.12.
금마농협 직매장	600	0	0	-	'22.12	'22.12.
김천농협 직매장(1년차)	50	13	37	'22.7	'22.11	'22.12.
산동농협 직매장(1년차)	50	0	4	-	'22.12	'23.6.
영덕울진축협 직매장	600	4	0	-	'22.12	'23.1.
남해축협 직매장	50	0	0	-	'22.12	'23.12.
합천군 직매장	400	17	7	-	'22.12	'23.2.
합계	2,450	384	62	-	-	-

주. 2022년 집행액은 2022년 8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신규 복합센터 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지역	신청자	1년차('23)	2년차('24)	계
정읍	(영)우리고을	300	300	600
아산	아산시	20	580	600
경주	양남농협	431	169	600
창녕	영산농협	300	300	600
광양	광양원예농협	30	570	600
신안	압해농협	395	205	600
계		1,476	2,124	3,600

주. 2022년 10월초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돌봄마을 조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돌봄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지역에 사회적 농장, 주간보호센터, 교육센터 등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장애인 등 농촌 주민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전남 화순군과 경북 성주군을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노령층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비교]

사업명	돌봄마을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확충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주 대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 이용 노인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복지 시설</li> <li>▪ 농장을 통한 돌봄·교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재활서비스 제공</li> <li>▪ 대상층에 휴식공간 제공</li> </ul>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현재 조성 중인 돌봄마을 2개소는 2024년 중 완공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시설 투자비용 등 초기 진입장벽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해주는 것이며,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5억원 증액된 615억원을 편성하였다.

내역사업인 지역특화 스마트팜<sup>1)</sup>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팜 혁신밸리<sup>2)</sup> 외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신규 3개소 및 2022년도 선정 4개소 조성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60억원 증액된 49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대형 스마트팜	45,196	41,000	41,000	61,500	20,500	50.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2,600	33,000	33,000	49,000	16,000	48.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개소당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국비 140억원, 보조율 70%)이며,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면 임대형 스마트팜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2년간 조성한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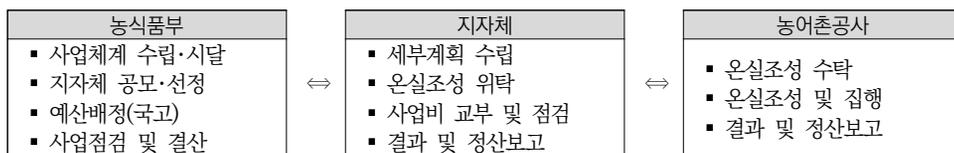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83의 내역사업

2) 스마트팜 관련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집약한 융복합 클러스터

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편성된 1차년도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020년도에 충북 제천과 강원 평창 2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국비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2개년 사업(2020년~2021년)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과 그로 인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률은 충북 제천의 경우 매년 5% 이하로 나타났고, 강원 평창의 경우에도 30%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에 선정된 4개 지역의 경우 2022.8월말 기준 기본계획은 승인되었으나, 설계가 착수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연도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국비	지방비					
충북 제천	2020	4,200	1,800	6,000	-	6,000	222	3.7
	2021	6,300	2,700	9,000	5,778	14,778	290	2.0
	2022	2,500	2,500	2,500	14,488	16,988	170	1.0
강원 평창	2020	4,200	1,800	6,000	-	6,000	378	6.3
	2021	6,300	2,700	9,000	5,622	14,622	1,798	12.3
	2022	2,500	2,500	2,500	12,824	15,324	4,060	26.5
강원 양구	2022	7,000	3,000	-	-	-	-	0
전남 신안	2022	7,000	3,000	-	-	-	-	0
경북 영천	2022	7,000	3,000	-	-	-	-	0
전북 장수	2022	7,000	3,000	-	-	-	-	0

주. 1) 2022년도 교부액 및 집행액은 2022.8월말 기준

2) 교부액 중 미집행액은 모두 이월되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계획은 1차년도에 지자체 공모, 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까지 하여 2차년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지자체 추경 편성과 기본계획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1차년도에 공사 착공까지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4)</sup>

따라서 현재 지역특화 스마트팜 예산은 사업기간을 2개년으로 하여 매년 사업비의 50%를 예산으로 계상<sup>5)</sup>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잦은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회계연도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1차년도 사업비 연부율을 조정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부터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1차년도 사업비 집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임.

5) [2023년도 지역특화 스마트팜 예산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신규 3개소	▪ 20,000백만원×3개소×70%(국비)×50%(1년차) = 21,000백만원
기존 4개소	▪ 20,000백만원×4개소×70%(국비)×50%(2년차) = 28,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가. 현 황

계란공판장 활성화지원 사업<sup>1)</sup>은 계란의 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구축된 계란공판장 내에서 계란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400만원 증액된 5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계란공판장 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축산물수급관리	214,046	86,378	84,078	86,541	2,463	2.93
계란유통센터시설 현대화	3,600	4,410	4,410	7,916	3,506	79.5
계란공판장 활성화지원	-	-	2,402	5,606	3,204	133.4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란은 농장과 상인이 직접 계약을 한 후 양계협회 고 시가격을 토대로 사후정산을 하는 관행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유통센터로 하여금 계란공판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여신을 제공하여 거래대금이 당일 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계란 거래방식과 비교하여 계란공판장을 경유할 경우 농가에게 운 송비, 선별비, 상장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계란공판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낮 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동 사업을 통해 1년 한시로 지원하 고 향후 공판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안정화되면서 계란 거래대금 사후 정산에 따른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1-303의 내역사업

가격 할인 등이 사라지면 농가가 공판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란공판장 활성화지원 사업은 공판장 출하에 따른 운송비, 상장수수료 등을 지원하며, 2023년도에는 포천축협과 해밀(경기여주)에 대한 2년차 사업비 7개월분과 양계농협(평택)에 대한 1년차 사업비 12개월분을 반영하였다.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p>•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 70만개/일 × 22일 × 14원/개<sup>1)</sup> × [2개소(2년차)×7개월<sup>2)</sup> + 1개소(1년차)×12개월] = 5,606백만원</p> <p>1) 14원 = 3원/개(운송비) + 상장수수료 3원/개 + 8원/개(선별비 16원/개×50%)</p> <p>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지원(1년차) 5개월분 제외</p>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2022년 7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유통비용 지원사업 편성 이후 공판장 일평균 계란 거래량은 개소당 약 80만개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지원사업 편성 전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약 20만~30만개 수준으로 저조하였으므로,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란공판장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말에 개설이 완료된 포천축협·해밀 계란공판장은 2022년부터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래 물량을 살펴보면, 2022년 초 거래물량은 포천축협의 경우 일평균 약 20만개 수준이고, 해밀의 경우 일평균 약 30만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2년 7월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8월부터 계란공판장 유통비용을 지원한 뒤로 9월 공판장 거래물량은 포천축협의 경우 일평균 약 70만개 수준, 해밀의 경우 일평균 약 80만개 수준으로 2023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상 지원목표로 하고 있는 물량 70만개를 상회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1년 단기 사업으로서,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유통상인과의 직거래 방식에 비해 계란공판장 유통 시 상장 비용 등의 추가 발생에 따라 공판장에 출하할 유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포천·해밀 계란공판장별 거래 현황]

구분			2022년				
			1분기	2분기	7월	8월	9월
포천	건수	(건/일)	4	6	7	14	22
	물량	(만개/일)	12.1	22.7	24.9	50.1	71.2
	거래액	(백만원/일)	19.3	38.2	40.3	77.3	104.8
해밀	건수	(건/일)	5	6	6	15	20
	물량	(만개/일)	36.4	30.8	21.6	67.4	82.3
	거래액	(백만원/일)	53.1	51.9	33.6	113.5	13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거래 강화를 통한 운송비 축소, 공판장 개소 수 확충을 통한 공판장 계란가격의 대표성 확보 등 계란공판장에서의 유통이 증장 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팜 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수출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팜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4,100만원 증액된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내역사업인 데모온실 조성<sup>1)</sup>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팜을 홍보하기 위한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데모(시범)온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카자흐스탄 1개소(2021.10월 준공), 베트남 1개소(2022.6월 준공)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부터 호주에 데모온실 1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의 2년차 사업비 반영을 위해 7억 4,100만원 증가한 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4,732	1,769	1,769	2,610	841	47.5
데모온실 조성	3,140	840	840	1,581	741	8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호주에 1개소 추가 건설하는 데모온실 조성 사업의 민간 컨소시엄 모집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자 모집 시 공고하였던 총사업비 규모와 달리 2023년도 예산안(2년차 사업)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증액 반영하고 있어, 사업이 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농업법인·기업 등 구성)을 모집하면서 총사업비 규모를 총사업비 23억 4,000만원으로 하면서 2년간 국비 70%, 자부담 30%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2022년도 5월 공고하였다.

하지만 민간 컨소시엄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2022년 9월 재공고를 하면서 2023년 12월에 온실을 완공할 계획인 상황이다.

2020년도에 베트남 데모온실 구축 시에도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20년 10월에 컨소시엄을 모집하였으나, 결국 2022년 6월에 완공<sup>2)</sup>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호주 데모온실 조성도 2023년 연내에 완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3)</sup>

한편, 총사업비 규모는 현재 민간 컨소시엄 모집 공고상으로 총사업비 23억 4,000만원 중 국비 16억 3,800만원, 민간 7억 2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나,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계획 상으로는 총사업비를 34억 5,8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국비 24억원, 민간 10억 5,800만원으로 증액된 상황이다.

### 2) [베트남 데모온실 조성 추진 일정 내역]

추진 일정	기존 공고	실제
컨소시엄 모집 공고·접수	'20.10.~'20.11.	'20.10.~'20.11.
사업자 평가·선정 및 협약	'20.11.	'20.11.~'20.12.
선정 컨소시엄 보조금 교부	'20.12.	'20.12.
사업계획 조정	'20.12.	'20.12.
사업추진	'20.12.	'20.12.
'22년 사업비 정산 및 '23년 사업추진	'20.11.~'21.12.	'21.3.~'2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데모온실의 경우 코로나19로 국내 기업의 출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지연된 것으로, 호주 사업의 경우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모집 공고			→	2023 예산안 반영			
	국비 지원금	민간 자부담	합계		구분	국비	민간 자부담	합계
합계	1,638 (100%)	702 (100%)	2,340 (100%)		합계	2,400 (100%)	1,058 (100%)	3,458 (100%)
1년차	819 (50%)	351 (50%)	1,170 (50%)		1년차	819 (34%)	351 (33%)	1,170 (34%)
2년차	819 (50%)	351 (50%)	1,170 (50%)		2년차	1,581 (66%)	707 (67%)	2,288 (66%)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자재 비용, 물류비 등 조성비용 증가로 인한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민간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집 공고문에 예산 변동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환율·고물가 영향으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운송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급등하여 2022년 1월 정점에 이른 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4)</sup>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데모 온실 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 계획이 증도에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변동 현황]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29	2022.9.30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940.9	1,022.72	2,872	5,109	3,887.85	1,922.95

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ft 컨테이너당 미달러(USD)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임에 기초 하여 산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한 예산 세부내역 편성 필요

### 가. 현 황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sup>1)</sup>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스마트팜 영농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팜 관련 취·창업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8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17,982	8,000	8,000	8,000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4개의 보육센터(경북 상주·경남 밀양·전북 김제·전남 고흥)에서 총 208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20개월간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가르치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에게 수강료 및 숙식을 제공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프로그램]

과정명	기간	주요내용
입문과정	2개월	▪ 창농 지식, 투자유치 컨설팅, 스마트팜 운영관리 등
교육형 실습	6개월	▪ 실습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실습
경영형 실습	12개월	▪ 자기 책임 하 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실습장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연제 예산분석관(fabir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80

## 나. 분석의견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 상 매년 10명 내외의 교육생이 중도포기를 하고 있고, 교육생이 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실제 교육기간 20개월 외에 사전·사후 교육기간 (4개월)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각 연차별 선발된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1년차 6개월, 2년차 12개월, 3년차 6개월의 보육운영비를 편성하였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연차	산출내역
1년차 (6개월)	▪ 200명 × 20백만원 × 50%(6개월) × 국비100%
2년차 (12개월)	▪ 200명 × 20백만원 × 100%(12개월) × 국비100%
3년차 (6개월)	▪ 200명 × 20백만원 × 50%(6개월) × 국비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각 교육과정별 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08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진행될수록 개인 생업과의 병행 문제 등으로 과정당 10명 수준의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예산산출 내역상 교육생 수와 실제 교육생 수가 불일치하고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 현황]

(단위: 명)

모집연도	입문		교육형		경영형	
	모집	수료	모집	수료	모집	수료
2020	208	190	190	179	179	158
2021	208	197	197	181	181	교육중
2022	208	교육중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동 사업은 실제 보육운영 외에도 사전교육, 사후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상 반영된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1년차로 반영된 6개월 중에는 선발 및 사전교육 기간 2개월이 반영되어 있고, 3년차로 반영된 6개월 중에는 교육 수료 후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개월이 교육 기간에 반영되어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2023년도 예산안 반영 세부 교육 기간]

연차	세부 교육 기간
1년차 (6개월)	▪ <u>선발 및 사전교육(2개월)</u> + 입문교육(2개월) + 교육형실습(2개월)
2년차 (12개월)	▪ 교육형실습(4개월) + 경영형실습(8개월)
3년차 (6개월)	▪ 경영형 실습(4개월) + 사후지원(2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세부내역 편성 시 교육과정별 수료 현황을 반영하고, 20개월 교육과정 외에 교육생 선발 및 사전교육, 사후지원 등이 구분되어 편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17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98억원(16.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2,23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8억원, 수산발전기금 5,876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52,052	213,952	213,952	329,814	115,862	54.2
- 일반회계	81,009	49,092	49,092	57,897	8,805	17.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706	28,749	28,749	31,998	3,249	11.3
- 교통시설특별회계	132,938	117,764	117,764	223,296	105,532	89.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32	3,842	3,842	3,848	6	0.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367	14,505	14,505	12,775	△1,730	△11.9
기 금	407,162	573,676	573,676	587,635	13,959	2.4
- 수산발전기금	407,162	573,676	573,676	587,635	13,959	2.4
합 계	659,214	787,628	787,628	917,449	129,821	16.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6조 3,81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850억원(2.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1,50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4,41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5,86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6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81억원, 수산발전기금 6,699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447,182	5,861,382	5,614,543	5,711,508	96,965	1.7
- 일반회계	1,866,737	2,160,423	2,111,663	2,150,128	38,465	1.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05,638	1,812,708	1,836,982	1,441,005	△395,977	△27.5
- 교통시설특별회계	1,494,708	1,644,995	1,450,642	1,585,932	135,290	8.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4,154	107,485	79,485	66,328	△13,157	△19.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5,945	135,771	135,771	468,115	332,344	71.0
기 금	588,832	523,567	581,932	669,925	87,993	13.1
- 수산발전기금	588,832	523,567	581,932	669,925	87,993	13.1
합 계	6,036,014	6,384,949	6,196,475	6,381,433	184,958	2.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6,92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56억원(9.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5,85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8억원이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1,009	49,092	49,092	57,897	8,805	1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706	28,749	28,749	31,998	3,249	11.3
교통시설특별회계	1,332,938	1,644,995	1,450,642	1,585,932	135,290	9.3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1,032	3,842	3,842	3,848	6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367	14,505	14,505	12,775	△1,730	△11.9
합 계	1,452,052	1,741,183	1,546,830	1,692,450	145,620	9.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74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67억원(1.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5,12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4,41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5,859억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66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81억원이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361,894	3,737,654	3,494,541	3,512,764	18,223	0.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05,638	1,812,708	1,836,982	1,441,005	△395,977	△21.6
교통시설특별회계	1,624,708	1,644,995	1,450,642	1,585,932	135,290	9.3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64,154	107,485	79,485	66,328	△13,157	△16.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5,945	135,771	135,771	468,115	332,344	244.8
합 계	7,072,339	7,438,613	6,997,421	7,074,144	76,723	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산발전기금으로만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354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913억원(9.9%) 감소하였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산발전기금	457,636	926,722	926,722	835,417	△91,305	△9.9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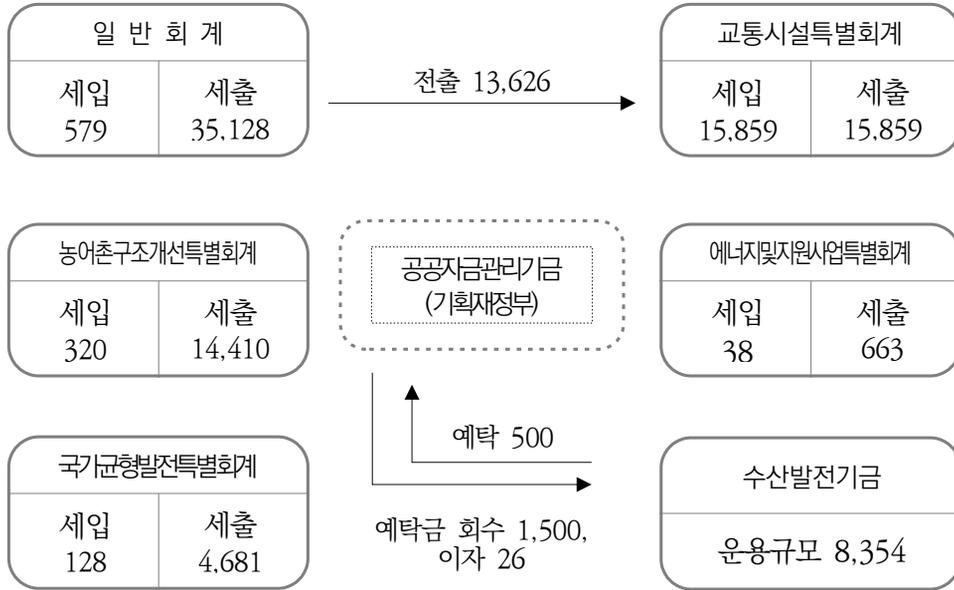
##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해양수산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3,626억원이 전출된다.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00억원을 예탁하고, 26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 받으며, 1,50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한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어촌활력 제고 및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2022년 1조 193억원 → 2023년 1조 2,331억원)하고, ②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를 공고화(2022년 3,387억원 → 2023년 4,982억원)하고, ③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해양물류 선도체계를 구축(2022년 4,168억원 → 2023년 6,319억원)하고, ④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부표 보급,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의 사업(2022년 3,509억원 → 2023년 4,629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비축사업 등 수산물 수급안정 관련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당초 계획)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방식 개선, 탄력적 구매·방출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연차별 연부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개정으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일부 소득구간간 소득역전 현상 및 이로 인한 부정수급신청 유인이 우려되고, 법률상 금지된 어가·어선원간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25개 사업, 98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갯벌세계유산관리사업은 세계자연유산인 한국갯벌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R&D)사업은 동북아지역 원전사고에 대비한 해양방사능 오염의 신속한 탐지·예측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수산부산물자원순환기반구축사업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해양디지털항로실증기술개발(R&D)사업은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을 위한 선박항해통합장비, 통신연계기술 및 운영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글로벌저탄소선박정책대응지원사업은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신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의 생활공간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6개)	(다부처)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및실증(R&D)	2,000
	4대강물길복원에따른연안하구역환경, 생태계모니터링 및활용기술 개발(R&D)	1,425
	갯벌공간정보변화모니터링기술개발(R&D)	1,800
	갯벌세계유산관리	2,120
	고품질준실시간해양그리드데이터서비스체계개발(R&D)	1,7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급격한남극빙상용융에따른근미래전지구해수면상승예측기술개발(R&D)	4,060
	생태계기반수산정책지원기술개발(R&D)	1,700
	순환적응형연안침식관리기술개발(R&D)	2,000
	스마트선박용수로정보표준개발(R&D)	2,000
	용융염원자로(MSR)혁신기술개발(해수부)(R&D)	400
	쿠로시오해류로인한한반도해양위기대응기술개발(R&D)	2,100
	탄소중립실현을위한파력발전상용화기술개발(R&D)	2,000
	해양무인시스템실증시험·평가기술개발(R&D)	2,000
	해양바이오원료·제형화기술개발(R&D)	1,800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R&D)	1,800
	해저활성단층특성규명연구(R&D)	1,0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개)	수급위기관리체계구축	1,220
	수산부산물자원순환기반구축	1,936
교통시설특별회계 (5개)	국제표준기반지상파-위성통합VDES체계기술개발(R&D)	1,300
	부산항신항만수리조선단지	2520
	선박배출온실가스(GHG)통합관리기술개발(R&D)	2,000
	해양디지털항로실증기술개발(R&D)	1,190
	LNG 병커링동시작업기술개발(R&D)	90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개)	글로벌저탄소선박정책대응지원	13,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어촌신활력증진	44,390
합 계		98,361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 사업, ‘수산물비축’ 사업,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사업, ‘친환경선박보급촉진’ 사업, ‘부산항제2신항’ 사업 등이 있다.

①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사업은 해양생태과학관 및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고, ② 비축사업 예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비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증액되었으며, ③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사업은 양식핵심기술 개발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센터 구축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또한, 친환경선박보급촉진사업은 표준설계 및 자동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선박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되었다. ⑤ 부산항제2신항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조성, 진입항로 준설 및 수변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고, 어업보상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3,350	3,350	42,190	38,840	1,159.4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6,528	6,528	34,394	27,866	426.9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2,817	12,817	23,085	10,268	80.1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7,930	7,930	17,280	9,350	117.9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17,179	17,179	25,722	8,543	49.7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R&D)	2,163	2,163	9,135	6,972	322.3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4,875	4,875	10,550	5,675	116.4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6,833	6,833	11,291	4,458	65.2
	해양보호구역관리	11,420	11,420	15,093	3,673	32.2
	해양위험유해물질(HNS)배출등관리기술개발(R&D)	4,038	4,038	7,560	3,522	87.2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생산기술개발(R&D)	3,120	3,120	6,516	3,396	108.8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3,249	3,249	6,352	3,103	95.5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R&D)	6,975	6,975	9,875	2,900	41.6
	국고여객선 건조	1,620	1,620	4,202	2,582	159.4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R&D)	2,325	2,325	4,500	2,175	93.5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00	2,000	4,000	2,000	100.0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3,366	3,366	4,700	1,334	39.6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2,049	2,021	3,049	1,028	50.9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R&D)	2,625	2,625	3,500	875	33.3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2,429	2,429	3,240	811	33.4
	항행안전정보(정보화)	853	853	1,177	324	38.0
	해양생명자원조사	600	600	800	200	33.3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289	289	410	121	41.9
	(총액)서해어업관리단공익요원경비	14	14	23	9	64.3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총액)	14	14	23	9	64.3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공익요원경비	2	2	3	1	50.0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9개)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1,828	42,828	63,028	20,200	47.2
	수산 공익직불제	55,869	55,858	93,328	37,470	67.1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96,331	99,632	123,813	24,181	24.3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116,295	116,295	133,843	17,548	15.1
	연안국과의 협력(ODA)	14,858	14,808	28,730	13,922	94.0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120,446	120,446	134,078	13,632	11.3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887	3,887	11,407	7,520	193.5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2,300	2,300	9,618	7,318	318.2
	수산식품산업육성	1,807	1,807	8,343	6,536	361.7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4,410	4,410	10,519	6,109	138.5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 원	7,105	7,105	12,275	5,170	72.8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R&D)	4,100	4,100	8,475	4,375	106.7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R&D)	1,920	1,920	4,961	3,041	158.4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 술개발(R&D)	5,000	5,000	7,000	2,000	40.0
	지속가능한어업생산 체계 구축	1,802	1,802	3,482	1,680	93.2
	관상어산업육성	3,855	3,855	5,315	1,460	37.9
	낙시산업 선진화	2,316	2,306	3,416	1,110	48.1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1,680	1,680	2,595	915	54.5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340	340	640	300	88.2
교통시설특 별회계 (16개)	부산항 제2신항	15,000	15,000	129,811	114,811	765.4
	광양항(3단계)	120,280	101,980	165,282	63,302	62.1
	새만금신항	126,236	101,236	168,179	66,943	66.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 사업(R&D)	16,343	13,483	36,838	23,355	173.2
	목포항	4,285	4,285	22,041	17,756	414.4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항	87,981	87,981	103,505	15,524	17.6
	인천남항	2,313	2,313	14,500	12,187	526.9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100	100	7,000	6,900	6,900.0
	여수신북항	12,279	12,279	16,950	4,671	38.0
	광양(여천)항	11,798	5,998	16,000	10,002	166.8
	인천항	9,327	9,327	13,500	4,173	44.7
	수출입물류항만-내륙연계 기술개발(R&D)	5,226	5,226	8,096	2,870	54.9
	부산항	6,100	6,100	8,407	2,307	37.8
	물류기업유치지원	2,957	2,957	3,845	888	30.0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 스트베드 구축(R&D)	1,937	1,937	2,582	645	33.3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1,726	1,726	2,329	603	34.9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3개)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7,500	7,500	11,500	4,000	53.3
	국가어항(제주)	6,940	6,940	10,240	3,300	47.6
	산지유통시설지원	2,280	2,280	3,480	1,200	52.6
수산발전 기금 (3개)	비축사업	75,910	108,610	175,000	66,390	61.1
	수산물수매지원(용자)	65,370	85,370	115,370	30,000	35.1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 선 복원사업	7,706	7,706	12,648	4,942	64.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 1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 필요

## 가. 현 황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1999년 처음으로 4개 어종·2개 업종에 대해 도입하여 2022년 9월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sup>1)</sup>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2019년에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의하면 향후 어업관리정책을 TAC 중심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TAC를 확대<sup>2)</sup>할 계획이다.

2023년 예산안에는 TAC 제도와 관련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사업<sup>3)</sup>에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비 및 수산자원조사원 인건비로 46억 3,900만원,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용자) 사업<sup>4)</sup>에 105억원, 수산공익직불제 사업<sup>5)</sup> 중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으로 119억 3,400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자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대형트롤(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 시범사업: 기선권현망(멸치)

2)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 (17년) 25% → (30년) 80%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04

4)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00

5)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60-310

[2023년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 및 지원 사업 예산안 및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계획안(B)	증감	
		본예산/당초	추경/수정(A)		B-A	(B-A)/A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65,477	65,881	65,881	66,513	632	0.96
총허용어획량제도운영	4,005	4,453	4,453	612	△3,841	△86.3
수산자원조사원인건비	-	-	-	4,027	4,027	순증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9,450	10,500	10,500	10,500	0	0.0
수산공익직불제	51,479	55,869	55,858	93,328	37,459	67.0
수산자원보호직불	8,134	11,934	11,934	11,934	0	0.0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 나. 분석의견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TAC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TAC 규모 적정성, 소진량 측정 정확성, 소진량 저조원인과 그에 따른 TAC 제도 효과성 등을 논의하여 남획 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불법어업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AC를 적절하게 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TAC 소진현황에 따르면 소진율은 53.0~80.9% 가량으로 나타나고, 최근 3년간 어종별 TAC 소진현황에 따르면 12개 어종 중 7개 어종(오징어, 전갱이,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바지락)의 소진율이 7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TAC 소진현황]

(단위: 톤,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1~ '18.6.	'18.7~ '19.6.	'19.7~ '20.6.	'20.7~ '21.6.	'21.7~ '22.6.
할당량(A)	437690	417010	415217	392347	388827	444891	272646	309507	289863	276,589
소진량(B)	331276	301637	317193	284686	274120	265,413	185,842	167,727	153,597	211,472
소진율(B/A)	75.7	72.3	76.4	72.6	80.9	59.7	68.2	54.2	53.0	76.5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3년간 어종별 TAC 소진현황]

구 분	2019.7. ~ 2020.6.			2020.7. ~ 2021.6.			2021.7. ~ 2022.6.			연평균 소진율 (%)
	할당량 (톤)	소진량 (톤)	소진율 (%)	할당량 (톤)	소진량 (톤)	소진율 (%)	할당량 (톤)	소진량 (톤)	소진율 (%)	
합 계	309,507	167,727	54.2	289,863	153,597	53.0	276,589	211,472	76.5	61.2
오징어	97,362	39,425	40.5	89,078	32,993	37.0	88,834	43,422	51.8	43.1
고등어	132,452	85,540	64.6	123,527	73,297	59.3	116,592	108,008	92.6	72.2
전갱이	30,727	15,678	51.0	29,424	18,792	63.9	31,779	23,797	74.9	63.3
도루묵	2,821	2,102	74.5	2,196	2,117	96.4	3,207	1,844	57.5	76.1
붉은대게	26,630	13,491	50.7	25,516	14,699	57.6	23,273	21,268	91.4	66.6
꽃게	5,798	2,062	35.6	5,033	3,404	67.6	5,102	4,695	92.0	65.1
대게	1,003	877	87.4	1,036	796	76.9	948	590	62.2	75.5
키조개	7,437	5,071	68.2	8,582	4,124	48.1	6,797	4,537	66.8	61.0
개조개	1,551	1,169	75.4	1,507	831	55.1	1,056	749	71.0	67.2
참홍어	377	371	98.5	447	447	100.0	789	707	89.7	96.1
제주소라	1,788	1,254	70.1	1,879	1,524	81.1	1,721	1,459	86.6	79.3
바지락	1,561	687	44.0	1,638	574	35.0	1,491	362	24.3	34.4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우 어종·업종별로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sup>6)</sup>, TAC 규모 적정성, 소진량 측정 정확성, 소진량 저조원인과 그에 따른 TAC 제도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sup>7)</sup>.

① 우선 TAC의 산출근거가 되는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이하 “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의 신뢰도, 객관성을 제고하여 TAC가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어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수산자원 고갈하는데... 어획량 조사 사각지대 우려”, 코리아플러스, 2019.10.10.

EU의 경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매년 회원국들에게 TAC와 쿼터를 할당하고 주요 어종에 있어서 평균 96%의 소진율을 달성하고 있다.

출처 : <http://www.k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18501>

7)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TAC를 순차 확대 중인 일본의 경우에도 어업인 민원을 고려하여 할당량을 여유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평가를 통해 ABC를 추정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사회·경제적 요인, 어업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당해 어기의 TAC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ABC는 인접국과의 어업협상(어업쿼터 확보 등) 기초·근거자료이므로, 국제 어업협상 과정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종별로 최근 1년간 소진율이 34.4~96.1%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ABC 값 이하로 정해진 TAC를 지키고 있는데 전년 대비 소진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ABC 값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정어리의 경우 1999년부터 TAC로 관리되었으나, 어획량이 급감하여 2009년부터는 TAC 대상어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리고 한 어종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어획이 가능하고, 해당 업종이 모두 TAC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데, 특정 어종·업종에 대해 TAC를 설정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sup>8)</sup>. 현재 ABC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전체에 대해 산출한 후, 이를 업종별 과거 어획량 비율을 적용하여 업종별 ABC를 산정하고 있는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TAC 적용시 다른 업종에서 해당 어획량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여러 해역을 이동하는 특성상 ABC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종·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ABC 산출방식 고도화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 회유성 어종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TAC 설정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그리고 어획량 조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정위판장 외 판매여부, 위판장 내 판매량 계측 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어획량 통계의 정확성 및 TAC 제도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다.

8) “어족자원 관리 정확한 데이터 기반 ABC 산정 필요”, 어업인수산, 2021.6.16.

우리나라는 현재 단일어종, 단일어업 가정하에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llowable Biological Catch, 이하 ABC)에 의해 TAC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수십 개가 넘는 어업으로 구성돼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다양한 어구로 이용해 어획하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28>

해양수산부는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3.)에 따라 IoT 기반 스마트 조사관리 체계를 마련<sup>9)</sup>하고, 지역별 현장사무소를 확충하며 수산자원조사관을 충원해 조사·관리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런데 TAC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족하고, 지정판매장소 내 판매현황을 관리할 수산자원조사원의 인력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획량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인력·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17~2022년 현재까지 TAC 지정판매소 및 조사원 등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별현장사무소	8	10	12	20	20	20
지정판매장소	118	118	118	121	121	127
수산자원조사원	70	85	95	95	120	120
TAC 위반 적발건수	1	0	1	0	4	-

자료: 해양수산부

③ 마지막으로 TAC 소진을 저하원인은 해당 어종 남획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불법어업으로 인한 영향, 타 업종으로의 풍선효과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AC를 적절하게 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상 어종이 회유성 어종인 경우 수온 변화로 인해 주된 어장 위치나 어업자원이 변동될 수 있고, 정착성 어종인 경우에도 다른 어종 허가를 받은 어선의 혼획, 다른 업종허가를 받은 어선의 남획, 타 국가의 남획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TAC 대상 어선의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TAC 대상 어종·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sup>10)</sup>되면서, 이러한 어종·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앙수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9) (기존) 수기로 기록한 후 이메일 제출 → (변경) 휴대용단말기를 활용한 웹기반 관리

10) 동일 어종 중 일부 업종 TAC 제외현황: 고등어 등 15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어업 41개 어업의 종류(업종) 중 어획량이 많은 근해어업과 일부 연안어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관리 인프라 확충 및 TAC 제도에 대해 연근해어업에서 정착이 되면 연안어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즉, TAC 소진을 저조원인에 따라서는 총허용어획량 관리 외에 타 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조성사업 확대, 외국과의 공조 등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및 타국 공조 등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sup>11)</sup>.

둘째, TAC 경영개선 자금(용자) 사업은 2021년부터 보다 직접적인 지원제도인 TAC 참여 어선에 대한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이 신설되었고, 다른 이차보전사업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또는 중장기적인 사업간 통합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TAC 경영개선 자금(용자) 사업은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TAC 도입에 따른 어민들의 수입 감소분을 직접적으로 보전해주지 못하고, 현금유동성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TAC 참여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수산공익직불제<sup>12)</sup>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설하였고,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일부 수산자원보호의무를 함께 이행하는지 관리하여 평균 800만원<sup>13)</sup>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다른 세부사업인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sup>14)</sup>의 내역사업인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사업으로 일반적인 어선어업인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

11) 해양수산부는 한·중 및 한·일 어업협상 시 회유성 어종에 대한 공동자원평가와 TAC 공동 적용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협상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에도 인접국과의 어업협상 시 회유성 어종에 대한 공동자원관리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한·일 협상 결렬('16년~), 한·중 협상은 중국측 반대(중국 4개월 일제 금어기 실시)

1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60-310

1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  
연근해어선 1,467척 × 평균 지급단가 8백만원 × 국비100% + 행정비(직불금1.7%) = 11,934백만원

1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50-301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용자)사업과 유사사업간 비교]

사업명	지원한도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용자)	어업별 소요액 <sup>1)</sup> 130%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TAC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li> <li>○ (지원조건) 금리 - 2.5%~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li> </ul>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TAC 참여어업인은 어업별 소요액 <sup>1)</sup> 100%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li> <li>○ (지원조건) 금리 - 2.5~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가능</li> </ul>

주: 1) 집행주체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포함) 조사결과 보고서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두 사업은 각각 지원방식(용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한도, 대출기간이 일부 상이하지만<sup>15)</sup>, 어업인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저금리의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 대상, 효과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2021년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인 수산보호직불제가 신설되었는데 유사한 지원사업이 병존하고 있어 동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필요성이 불분명하다.

[2017~2022년 8월말 현재까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신청·승인현황]  
(단위: 개, 척, 백만원, 명)

구 분	TAC대상 어종/업종	TAC 대상어선			당초 계획액	대출신청		대출승인	
		합계	정식	시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7	11/13	1,286	1,286	0	9,174	63	8,877	52	7,341
2018	11/13	1,391	1,391	0	8,274	66	8,179	48	4,379
2019	12/14	3,154	1,447	1,707	8,274	39	7,912	37	7,752
2020	12/14	3,736	1,944	1,792	8,274	36	8,274	36	8,274
2021	12/14	3,648	1,891	1,757	9,450	32	8,779	32	8,579
2022.8.	15/17	3,701	3,318	383	10,500	38	10,500	27	6,310
평 균(2017~2021)					8,689	47	8,404	41	7,265

주: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용자 대상은 TAC 정식적용 어선과 시범적용 어선 모두 해당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최근 TAC 대상 어종·업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승인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동 사업에 따른 대출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또는 중장기적인 사업간 통폐합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지원한도가 어업별 소요액 100% 범위를 초과한 소요액(130% 내)이므로 동 사업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해양수산부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가능성에 대비하여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와 수산물 수급안정 등에 중점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안에는 수산물 수매지원사업<sup>1)</sup>에 전년대비 300억원 증가한 958억 4,000만원, 비축사업<sup>2)</sup>에 전년대비 669억 3,000만원 증가한 1,750억원을 편성하여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위기관리체계 구축사업<sup>3)</sup>을 신규<sup>4)</sup>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대중성어종의 가격동향 및 수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sup>5)</sup>으로 전년대비 610억원을 편성하여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2023년도 수산물 수급안정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계획안(B)	증감	
		본예산/당초	추경/수정(A)		B-A	(B-A)/A
수산물 수매지원(용자)	91,389	65,370	85,370	115,370	50,000	76.5
수산물 수매지원	71,859	45,840	65,840	95,840	30,000	45.6
비축사업	100,844	75,910	108,610	175,000	66,390	61.1
비축사업	100,515	75,370	108,070	175,000	66,930	61.9
수급위기관리체계 구축	0	0	0	1,220	1,220	순증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60,974	21,828	42,828	63,028	66,390	61.1
수산물상생할인지원	59,000	20,000	61,000	61,000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066-300

2) 코드: 수산발전기금 3066-302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0-322

4) 종전 비축사업(3066-302)내 내역사업인 유통종합정보시스템(3억원), 수산물물가실태조사(2억 4,000만원)을 확대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다.

5)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4-340의 내역사업

## 2-1.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의 가격 인하 효과 분석 및 사업성 과분석을 반영한 사업관리 필요

### 가. 현 황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사업<sup>6)</sup>은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① 수산물 소비촉진, ② 수산일의 날 행사, ③ 수산정책홍보 사업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④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따른 소비위축에 대응하고자 신규 편성된 ⑤ 후쿠시마 대응홍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분야 내수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21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본예산 390억원에 추경 200억원이 증액되어 총 590억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본예산으로 200억원에 추경 등 410억원이 증액되어 총 6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610억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

[2020~2023년 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액	0	21,000	39,000	59,000	20,000	61,000	61,000
집행	집행액	20,980 (99.9%)	59,000 (100.0%)	37,905 (62.1%)	-	-	-
	실집행액	20,859 (99.4%)	58,411 (99.0%)	30,383 (49.8%)	-	-	-

주: 2022년 집행액과 실집행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6)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4-340

## 나. 분석의견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산물은 특성상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할인쿠폰 지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은 공급자·유통업자에게 주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할인 품목을 결정하고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산물은 다양한 대체재가 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지만, 공급자로서는 시장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어획량을 즉시 늘리기 어렵고 쌀·밀 등 상당수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냉동보관 등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그런데 보조금은 부(負)의 조세로서 조세와 마찬가지로 정책효과의 전가·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sup>7)</sup>.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 인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산물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유통업자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즉,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일정 금액을 인하하도록 쿠폰을 지원하더라도 수산물 특성상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쿠폰 지급 혜택이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sup>8)</sup>. 따라서 동 사업의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별<sup>9)</sup>로 수요·공급별 가격탄력성을 파악하고, 이 중 생산자와 유통업자 각각에게 귀착되는 정도 등을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본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해양수

7)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인상에 따른 가격상승분(소비자에 대한 조세 부담 전가)이 작아진다. 반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 인하분(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귀착)이 작아진다.

8)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정부 할인(20%)과 함께 참여 유통업체도 자체할인(20~30%)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행사 전후 가격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 현재 할인품목은 해양수산부가 행사별로 지정한 품목과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한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해양수산부 지정 품목은 수산물 가격 현황, 소비 부진·제철 수산물, 물가·수급 동향과 생산·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별 할인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산부는 「2021년 수산물 상생활인 지원 사업 효과분석」(2022. 2., 이하 “2021 사업 효과분석”)으로 동 사업의 인지도, 이용행태 및 이용의향을 조사하는 한편, 구매유도효과 및 시장확대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sup>10)</sup>.

그런데 동 사업은 수산물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1 사업효과분석」에서도 동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낮게 평가한 소비자(전체 소비자 중 8.9%)는 ‘가격 할인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사업 중단 사유(1·2순위 선택 비율 50.6%)로 선택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하여, 생산자·유통업자에 대한 혜택 귀착 정도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 품목을 결정하고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sup>11)</sup>.

**둘째, 2021년도 실시한 성과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저조하고 할인 품목이 한정적이라는 불만이 있으므로, 인지도를 개선하고 수산물 수급 및 소비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인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1년 사업효과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에 따른 할인행사의 인지율(24.8%)은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통해 구입한 수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7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수산물을 구입한 경험은 14.5%로 낮으나, 이를 인지한 사람 중 58.5%는 할인쿠폰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넓은 소비자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1년 사업효과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비자는 ‘할인 품목이 한정적’이라는 것(1·2순위 57.9%)을 주요 불만족 사유로 응답한 바 있고, 수산물 재료 손질 부담으로 인해 개별포장된 수산물이나 밀키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성과분석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산물 수급 및 소비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인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 2021년간 투입된 사업비용 대비 매출증가분은 2.4~6.58배로 추정된다.

11)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는 밀키트와 같은 가공품을 할인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였다는 입장이다.

셋째, 2023년도 예산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홍보계획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기존 홍보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23년 상반기에 해양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대응홍보사업”은 소비자 단체,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팸투어<sup>12)</sup>,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일정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홍보계획 또는 홍보일정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소비자단체의 팸투어 등으로는 전 국민의 수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수산물 소비촉진<sup>13)</sup>”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체험교실운영,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고, “수산정책홍보”<sup>14)</sup> 사업으로 언론 광고, 기획기사,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수산정책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대응 홍보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홍보 강화는 기존 홍보사업과 사실상 사업목적, 홍보대상이 유사하며, 이와 차별화되는 팸투어 방식이 국가정책 홍보에 효과적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기존 홍보사업과 비교하여 신규 홍보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기존 홍보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FAM(familization) tour: 지방자치단체·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여행 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협력 업체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등을 제공

\*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 사전답사여행, 홍보여행, 초청홍보여행

13) 2023년 예산안 14억 4,800만원 산출내역

- ① 어식백세캠페인(984백만원×국비100%): 영유아체험교실운영 270백만원, TV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540백만원, 이달의 수산물 선정·홍보 90백만원, 어식백세 온라인 홍보 66백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워크숍 개최 18백만원
- ② 수산물판로확대(433백만원×국비100%): 단체급식지원 180백만원, 학교·군급식 관계자 쿠키클래스 운영 199백만원, 단체급식 레시피 개발·보급(54백만원)
- ③ 기타 자체홍보(31백만원×국비100%): 수산물 소비촉진 국민의식 설문조사 20백만원, 소비촉진관련 회의 및 공모사업 선정위 수당 등 8백만원, 적십자 바자회 참여 3백만원

14) 2023년 예산안 2억원 산출내역: 수산정책홍보 200백만원 × 국비 100%

## 2-2. 수매지원·비축사업의 탄력적 사업 관리 필요

### 가. 현 황

수산물수매지원(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산물수매지원사업(이하 “수매지원사업”)15)은 수산물 저장 또는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에게 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지원하여 주 생산시기에 수매토록 한 후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방출명령을 하여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편, 비축사업16)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주 생산시기에 대중성 어종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비축물량을 소비자 수요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두 사업은 민간 업체17)와 수협중앙회를 각각 지원하여 주 생산시기에 수매 등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가격 인상시 민간업체에게 방출명령을 하거나 비축된 물량을 방출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때 수매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수매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산물을 수매하며, 비축사업은 물가안정관리 대상 품목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6종18) 비축을 추진한다.

### 나. 분석의견

수매지원 사업과 비축사업은 물량 중심으로 설정된 성과지표, 보관기한 등으로 인해 두 사업의 수매·방출이 경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물가안정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성과지표 변경을 검토하거나 수산물 물가 실태조사·종합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15) 코드: 수산발전기금 3066-300의 내역사업

16) 코드: 수산발전기금 3066-302

17) 참고로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의 원료수매자금, 가공수매자금 중 원료수매자금은 수협중앙회도 지원받고 있다.

18) ① 계절적으로 생산량이 변동하는 조업 품목, ② 계획생산 불가, ③ 국민 다소비

수매지원사업과 비축사업은 각각 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인상되어 왔다.

[2017~2021년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2017	97.645	90.931
2018	99.086	93.811
2019	99.466	93.942
2020	100.00	100.00
2021	102.50	101.44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매지원사업 및 비축사업을 2021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10억원, 300억원씩 각각 증액하여 집행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각각 200억원, 327억원씩 증액하여 수산물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물가인상 추세<sup>19)</sup>를 고려하여 2023년도 계획안에서도 전년 당초계획 대비 각각 300억원, 669억 3,0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다.

19) [2020~2022년 8월까지 수산물 물가지수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물가지수	99.15	100.28	99.79	100.53	100.53	100.24	99.23	98.19	98.72	100.00	101.36	101.97
	증감률(%)	6.3	7.6	7.6	7.9	7.3	6.7	5.3	6.5	5.7	5.8	6.3	4.6
2021	물가지수	102.26	102.31	102.14	101.83	101.91	101.51	100.08	99.92	100.45	100.28	101.93	102.7
	증감률(%)	3.1	2.0	2.4	1.3	1.4	1.3	0.9	1.8	1.8	0.3	0.6	0.7
2022	물가지수	102.80	102.62	102.79	104.13	104.64	104.46	103.62	103.11	-	-	-	-
	증감률(%)	0.5	0.3	0.6	2.3	2.7	2.9	3.5	3.2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17~2023년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7	65,200	66,408	66,408	66,408	100	100	-	-
2018	65,200	66,105	66,105	66,105	100	100	-	-
2019	58,680	58,680	58,680	58,680	100	100	-	-
2020	58,680	58,680	58,680	58,680	100	100	-	-
2021	50,859	71,859	71,859	71,859	100	100	-	-
2022.8	45,840	65,840	65,840	30,375	62.9	43.8	-	-
2023(안)	95,840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17~2022년 비축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7	98,421	98,421	98,421	73,375	74.6	74.6	-	25,046
2018	86,323	86,323	86,323	72,880	84.4	84.4	-	13,443
2019	77,865	77,865	77,865	77,865	100.0	100.0	-	-
2020	73,942	73,942	73,942	73,942	100.0	100.0	-	-
2021	70,515	100,515	100,515	100,515	100.0	100.0	-	-
2022.8	75,370	108,070	108,070	60,000	55.5	55.5	-	-
2023(안)	175,000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도 계획안 증액으로 수매지원 사업의 민간업체 지원금액, 비축사업의 수매량 목표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두 사업의 성과지표가 각각 수매량 또는 비축물량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시 경직적으로 수매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 수매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성과지표를 비축물량에서 수매량으로 변경<sup>20)</sup>하고, 비축사업은 2022년부터 성과지표를 6개 대중성 어종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서 비축물량으로 변경<sup>21)</sup>하였다.

20) 수매지원사업으로 용자를 받아 수산물을 수매한 민간업체는 방출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비축물량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사업성과와 무관한 결과가

두 사업 모두 성과지표가 종전의 성과지표에 비해 수매량을 늘리고, 계획액을 최대한 집행하여야 성과목표 달성률이 제고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말잔액은 최대한 집행하는 등 수매가 경직적으로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sup>22)</sup>.

한편 비축사업의 경우 비축한 수산물은 장기 보관 시 선도 저하, 소비자 선호도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2년 안에 수매물량을 전량 판매하고 있다. 2017~2020년 비축사업 평균 집행액은 745억 1,600만원이고, 2021년부터 비축사업 집행액 및 계획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축물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방출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출 품목의 시세를 고려하여 방출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향후 보관기한 만료를 앞둔 비축물량이 늘어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sup>23)</sup>.

이를 종합하면 변경된 성과지표, 보관기한 등으로 인해 두 사업의 수매·방출이 경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물가안정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성과지표 변경을 검토하거나 수산물 물가 실태조사·종합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도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유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변경하였다.

22) 해양수산부는 비축대상 품목의 주생산시기가 하반기이므로 수매가 연말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품목별 주생산시기: 명태(5월~12월, 7월~익년 2월 반입), 고등어(9월~익년 1월), 오징어(7월~12월), 갈치(7월~12월), 조기(9월~익년 1월), 마른멸치(9월~익년 1월)

23) 해양수산부는 보관기한 외에도 수매는 수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시기에, 방출은 설, 추석과 같은 수요 급증 시기와 어한기와 같은 공급 부족 시기에 추진하고 있어 보관기한 제약만으로 방출량이 단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어촌뉴딜300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현황

어촌뉴딜300 사업<sup>1)</sup>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개소당 약 1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① 사업지 300개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어촌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혁신어촌조성”사업, ② 사업지원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③ 어촌뉴딜300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어촌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안·어촌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어촌활력증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어촌뉴딜 300	514,420	523,571	523,571	286,603	△236,968	△45.3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510,331	514,500	514,500	278,216	△236,284	△45.9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4,089	3,191	3,191	2,507	△684	△21.4
어촌활력증진지원	-	5,880	5,880	5,880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45-310

내역사업인 혁신어촌조성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 선정된 60개 대상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552억 1,600만원<sup>2)</sup>과 2022년 선정된 50개 대상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260억원<sup>3)</sup>을 합한 값인 2,78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추진운영단<sup>4)</sup> 운영비는 2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어촌활력증진사업은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지에 대한 2차년도 사업비 58억 8,000만원<sup>5)</sup>으로 편성되어 있다.

## 나. 분석의견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어촌조성사업은 사업연차별 연부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실제 사업기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어촌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 소규모 항·포구<sup>6)</sup> 및 배후어촌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별 평균 100억원(국고 보조율 70%)을 지원하여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하려는 사업이다.

2) 2021년도에 선정된 사업대상지 60개소는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종료할 예정이고, 당초 지원액 및 연부율에 따르면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23년도에는 1,680억원을 지급하여야 되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준공소요 1,5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다.

(60개소 × 100억원 × 국고보조율 70% × 3차년도 지원을 40% = 1,680억원)

3) 50개소 × 100억원 × 국고보조율 70% × 2차년도 지원을 36% = 1,260억원

4)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되었다.

5) 6개소 × 70억원 × 국고보조율 70% × 2차년도 지원을 20%

6) 어촌뉴딜사업 신청시 공간적 요건

\* (대상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 (배후어촌)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하여야 함

\* (권역단위) 동일 읍·면·동 내에 2개 이상의 대상어항 및 배후어촌을 권역단위로 설정하여 공모 신청 가능

자료: 어촌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동 사업은 사업개시연도 기준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 등 총 300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각 사업대상지를 3년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연부율은 2019년 선정사업 시작시 1차연도 35%, 2차연도 45%, 3차연도 20%였으나, 실집행 저조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2020년 선정사업은 각각 25%, 40%, 35%로, 2021년 선정사업은 각각 20%, 40%, 40%의 연부율로 조정하였고, 2022년 선정사업은 각각 15%, 36%, 49%의 연부율이 적용된다.

[어촌뉴딜 300사업 연도별 선정개소 및 연부율]

(단위: 개소, %)

연도	사업 대상지	연부율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	70	35	45	20	-	-	-
2020	120	-	25	40	35	-	-
2021	60	-	-	20	40	40	-
2022	50	-	-	-	15	36	49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그동안 동 사업 예산안은 선정연도별 사업개소 수, 총 사업비 100억원, 국고보조율 70% 및 사업연차별 연부율을 각각 곱한 값을 합산하여 편성되었고, 해양수산부는 편성된 예산을 대부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2019~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172,850	172,850	0	172,850	172,850 [85,738]	100 [49.6]	0	0
2020	434,448	434,448	0	434,448	434,220 [354,840]	99.9 [81.7]	173	55
2021	521,949	521,949	173	522,122	514,420 [418,694]	98.6 [80.2]	0	7,702
2022	523,571	523,571	0	523,571	356,306 [284,224]	68.1 [54.3]	0	0

주: 2022년 집행액 등은 7월 기준 작성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sup>7)</sup>의 실행액은 예산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예산안 편성내역 중 3년차 사업비(2021년 선정된 사업지의 실소요액)을 추정하는데 기존 사업지의 3년차 집행률(2019년 선정 사업지의 2019~2021년 집행률)을 참고하고, 2년차 사업비(2022년 선정된 사업지의 실소요액)를 추정하는데 기존 사업지의 2년차간 집행률(2019년 선정 사업지의 2019~2020년 집행률 및 2020년 선정 사업지의 2020~2021년 집행률)을 참고할 수 있다.

[2021년말 기준 2년차·3년차 사업지 집행률]

(단위: 개소, 백만원, %)

사업방식	선정 시기	사업 개소	예치 ·교부기간	교부 ·예치액 <sup>1)</sup>	집행액	집행률
지자체 직접수행	'19	19개소	'19~'20	145,835	71,598	49.1
			'19~'21	184,015	134,539	73.1
	'20	13개소	'20~'21	79,446	29,144	36.7
지자체 일부수행	'19	12개소	'19~'20	75,869	68,937	90.8
			'19~'21	95,935	75,255	78.4
	'20	16개소	'20~'21	89,290	20,586	23.1
공사위탁	'19	17개소	'19~'20	80,096	78,967	98.6
			'19~'21	106,207	78,967	74.3
	'20	52개소	'20~'21	273,887	117,267	42.8
공단위탁	'19	34개소	'19~'20	256,922	204,807	79.7
			'19~'21	321,143	215,558	67.1
	'20	55개소	'20~'21	322,647	97,857	30.3
3년차 사업지 집행률				707,300	504,319	71.3
2년차 사업지 집행률				1,323,992	689,163	52.1

주: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한 경우 사업기간간 국비 교부액 및 지방비 예산액 합산한 값이고, 공사·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업기간간 국비 및 지방비 예치액 합산한 값임  
자료: 해양수산부

7)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연도별 공사·공단 위탁현황]

(단위: 개소)

선정연도	사업 대상지	위탁현황				
		미위탁	공사위탁	공사일부위탁	공단위탁	공단일부위탁
2019	70	19	17	10	34	2
2020	120	13	52	10	55	6
2021	60	8	27	4	25	-
2022	50	11	23	1	16	-
합 계	300	51	119	25	130	8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도 선정된 사업지는 2021~2022년간 전체 사업비 중 60%(1년차 연부율 20%, 2년차 연부율 40%)를 지급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사업비 잔액(3년차 연부율 40%)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나, 2019년 선정된 사업지는 3년차 집행률(교부·예치금 대비 집행액 비율)이 71.3%로 나타나, 사업 준공소요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선정된 사업지가 모두 2023년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존 사업지의 실제 사업기간 및 집행률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선정된 사업지는 그동안 연부율 15%를 지급하였고, 2023년에 연부율 36%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전체 사업비 중 51%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19, 2020년 선정된 사업지의 2년차 집행률(교부·예치금 대비 집행액 비율)은 52.1%로 나타났는데, 2019년 선정 사업지의 2년차 총 연부율은 80%, 2020년 선정 사업지의 총 연부율은 65%이다. 기존 사업지의 집행실적을 고려하면 2023년도에도 전체 사업비 대비 총 집행액 비율은 2022년 예산액 및 2023년 예산안에 따른 총 연부율 51%(15%+36%)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기존 사업기간, 실집행률 등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뉴딜 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세부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중 유형 2 사업과, 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중 운영단 지원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촌활력증진지원사업은 어촌소멸위기 및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격차 발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도에 선정되는 사업 대상지 6곳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에는 어촌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신규·생활인구가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되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활력증진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어촌생활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앵커조직이 협력

하여 어촌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촌활력증진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혁신어촌조성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대상, 효과 등을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운영하여 혁신어촌조성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 어촌활력증진사업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촌활력증진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비교]

구분	어촌뉴딜 300사업(3345-310) 내 어촌활력증진	어촌신활력증진(3301-303)
목적	다양한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관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의 활력 제고	생활서비스 등 정주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신규·생활인구 증대
주체	지방자치단체 +민간앵커조직	민·관 공동시행 (지자체 + 민간조직*) * 앵커조직, 민간투자자 등
규모	6개소('22~'25) *시범사업	300개소('23~'30)
보조율	70%	유형1 : 50% 유형2, 유형3 : 70%
사업 범위	어항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생활권* * 1개의 생활권은 5~10개 마을 포함	
사업 구성	·어촌스테이션 조성: 생활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마련, 최소  ·안전시설(빈집, 어항 등) 개보수 등  * 사업 1년차에 역량강화, 지역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 확정	(경제공간) 민간투자+재정지원으로 지역 경제거점 조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 소득·복지기반 강화  (생활공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소외된 생활환경 개선  (휴식공간) 섬·어촌 접근성 증진, 디지털 관광기반 구축, 유·무형의 어촌 유산 보전·활용
수혜자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은 어촌뉴딜 300 사업의 지원단 운영비를 지원 하려는 사업인데, 별도 세부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 운영하는 지원단과 사

실상 동일한 조직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지원단 업무와 유사하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지원단은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단 운영, 홍보 등 사업관리, 대상지별 추진현황 점검 등 현장을 밀착지원하고, 신규사업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성과평가, 중간지원조직(민간앵커 조직 등)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두 사업 모두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어촌뉴딜사업 수행업무(선정, 심의 등)가 축소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과업 범위가 조정될 계획이므로, 유사 사업간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어촌신활력증진 사업<sup>1)</sup>은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여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부터 신설되었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는 44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어촌신활력증진	-	-	-	44,390	44,390	순증
어촌신활력증진	-	-	-	42,500	42,500	순증
어촌활성화지원	-	-	-	1,490	1,490	순증
어촌투자촉진지원	-	-	-	400	4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① 사업지 300개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금을 교부하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② 사업지원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어촌활성화지원”사업, ③ “어촌투자촉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는 1유형 5개소에 각각 15억원, 2유형 35개소에 각각 7억원, 3유형 20개소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425억원<sup>2)</sup>이 편성되었다.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01-303

2) 유형1 75억원(300억원×국비50%×5개소×10%) + 유형2 245억원(100억원×국비70%×35개소×10%) + 유형3 105억원(50억원×국비70%×20개소×15%) = 425억원

이 중 유형 1은 어촌 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향후 총사업비 300억원씩 4년간 지원할 예정이고, 유형 2는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총사업비 100억원씩 4년간 지원하며, 유형 3은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수준 확보를 목표로 3년간 50억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개요]

구 분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대상지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사업 목표	어촌 경제거점 조성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2023년 ~ 2026년(4년)	2023년 ~ 2025년(3년)
선정규모	5개소 (향후 5년간 총 25개소)	35개소 (향후 5년간 총 175개소)	20개소 (향후 5년간 총 100개소)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총 사업비: 300억 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 별도) (그 외 민간투자유치 100억원 이상 목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별도)	총 사업비: 5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 방식	대상 거점어항 주변 (5km, 5분 이내) 민간 투자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추진  재정지원은 소득·복지 복합시설 및 주거 등 생활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 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사업추진  어촌앵커조직(민간)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자료: 해양수산부

## 나. 분석의견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 사업은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대규모 어촌·어항개발사업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동일한 규모(3조원)로 추진하는 내용이나, 어촌뉴딜 300 사업에 따른 효과가 아직 검증·분석되지 않았으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수요·사업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을 통합개발하려는 사업이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역시 어촌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되었던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보완하여 어촌·어항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소득, 일자리, 주거를 함께 개선하여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어촌생활권을 설정하여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생활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어촌뉴딜 300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비교]

구 분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
대상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어촌	어항 중심의 어촌생활권* * 1개의 생활권은 5~10개 마을 포함
규모·기간	총 300개소 개소당 100억원 내외(3년)	총 300개소 (유형 1) 25개소, 300억원 내외(4년) (유형 2) 175개소, 100억원 내외(4년) (유형 3) 100개소, 50억원 내외(3년)
내용	(공통사업) 선착장 정비, 방파제 확장 등 어항시설 정비	(경제공간) 민간투자+재정지원으로 지역 경제 거점 조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 소득·복지기반 강화
	(특화사업) 관광, 레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생활공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소외된 생활환경 개선
	(역량강화) 사업결과물의 자산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휴식공간) 섬·어촌 접근성 증진, 디지털 관광 기반 구축, 유·무형의 어촌 유산 보전·활용

구 분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
추진 방식	지방자치단체 시행(지역협의체 참여)	민·관 공동시행 (지자체 + 민간조직*) * 앵커조직, 민간투자자 등
수혜자	어업인, 그 외 방문객	지역주민, 청년·귀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어촌뉴딜 300 사업은 2019년에 선정된 사업지 70개소가 대부분 사업 기간(3년)내 종료되지 못했고 2022년에도 준공되고 있어, 어촌뉴딜 300 사업에 따른 해당 어촌의 발전정도, 인구 증감 등 사업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나 사업성과분석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다. 즉, 동 사업은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검증하지 않고 내용 및 사업지별 지원금액 상한선 등을 오히려 확장하여 3조원 규모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동 사업의 기대효과 역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을 기반으로 5년간 전국적으로 어촌·어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비해, 동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다른 어촌·어항지원사업과 더불어 중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2023년도에 총 136개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사업의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동 사업의 1개년도 수요만을 평가한 것이고, 다른 어촌·어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이나 연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수요·사업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또한 현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사업방식에 따르면 집행률이 좋은 기존 어촌뉴딜 300 사업지와 이미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한 사업지가 유리할 수 있어 이미 국가나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어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투자가 저조했던 어촌에 대해서도 재원이 충분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우 2019~2022년간 총 555개소(기탈락 사업지

중복지원 제외)가 신청하고, 300개소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 중 유형 1은 국가어항 및 배후어촌 등이고, 유형 3은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유형 2의 경우 지방어항 및 배후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실상 종전 어촌뉴딜 300 사업 당시 신청한 사업자들이 동 사업의 유형 2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일부 어촌은 어촌뉴딜 300 사업에 이어 동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 1은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다른 유형 사업과 달리 호텔·마리나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및 스마트 양식·수산물 가공 등 수산 분야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서면평가(60%) 중 민간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100점 만점 중 10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해각서(mou), 실시협약 등 민간사업 유치 진척 정도에 따라 가점이 결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이 이미 순조롭게 유치되고 있는 사업지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간투자사업 유치 없이 재정사업으로만 어촌을 개발·관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국가나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어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투자가 저조했던 어촌에 대해서도 재원이 충분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sup>1)</sup>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기본형·선택형 직불금으로 제도 및 내역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4억 7,000만원이 증액된 93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산 공익직불제	39,016	55,869	55,858	93,328	37,470	67.1
·소규모어가 직불	11,777	12,367	12,367	51,224	38,857	314.2
·경영이양 직불	466	3,966	3,966	500	△3,466	△87.4
·수산자원보호 직불	5,696	11,934	11,934	11,934	0	0.0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19,273	25,597	25,597	27,865	2,268	8.9
·직불제 운영지원	1,804	2,005	1,994	1,805	△189	△9.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0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만 운영되었으나, 2020년 5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외에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 직불금 사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수산직불제법」 개정(2022. 9. 27.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기존 경영이양직불금 제도와 함께 별도 의무이행 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는 “기본형” 직불금(이하 “소규모어가 등 직불금”)으로 개편되었다.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60-310

[해양수산물 수산공익직불제 제도 개편]

구 분	개편전		개편후	
기본형	-		①-③ 어선원	
	①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①-⑥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외
		非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내
				①-⑦ 조건불리지역 非소규모어가
선택형	② 경영이양		② 좌동	
	③ 수산자원보호		③ 좌동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④ 좌동	

자료: 해양수산물부

이에 따라 해양수산물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의 농업·임업에 대한 공익직불금과 유사하게 별도 의무 이행 없이 본업을 수행하는 소규모어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제도도 신설하여 어가와 유사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물 수산공익직불제와 유사 공익직불제간 사업유형 비교]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공익기능직불제 <sup>2)</sup>	해양수산물부 수산공익직불제	산림청 임업·산림공익직불금 <sup>3)</sup>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근거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형	소규모농가(정액)	소규모어가	소규모임가	-
	면적(역진적 단가)	- <sup>1)</sup>	면적 (역진적단가)	면적 (역진적단가)
	-	어선원	-	-
선택형	-	조건불리지역 非소규모어가	-	-
	-	경영이양	-	-
	경관보전	-	-	-
	친환경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	-
	논활용	-	-	-

주: 1) 생산기반비례 직불제 도입 중장기 검토 예정

자료: 해양수산물부

### 3-1. 소규모어가 등 직불제 사업지침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필요

#### 가. 현 황

소규모어가 등 직불금은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도입될 예정인 공익직접지불 제도의 하나<sup>4)</sup>로, 기존 조건불리지역 거주어가 외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해서도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2만 2,665어가,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은 1만 5,000명이며, 기존 조건불리지역 중 비소규모어가의 경우 9,417어가가 지원대상이 된다.

[기본형 직불금 유형별 비교]

구 분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非소규모어가 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규모가 영세한 모든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영체는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과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어가 지원</li> </ul>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여부) 어업의 소득 일정금액(개인 2,000만원, 가구 4,500만원) 이하</li> <li>■ (중복지급 제거) 소농직불금 등 他 직불금 수령자 지급대상 제외</li> <li>■ 어업형태별(면허, 허가, 신고어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경영 규모 이하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 어선(내수면 어선 포함) 승선기록 6개월 이상 존재하는 내국인 어선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도서 및 해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li> </ul>
지원단가	■ 120만원	■ 120만원	■ 80만원
수혜자 수	■ 22,665어가	■ 15,000명	■ 9,417어가
예 산	■ 27,198백만원	■ 18,000백만원	■ 6,027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2) 코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71-302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06

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나. 분석의견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규모어가 등 직불금 사업은 소규모어가·어선원에 대해 연간 120만원을 정액지급하므로, 일부 소득구간간 소득역전 현상 및 이로 인한 부정수급신청 유인이 우려되고, 법률상 금지된 어가·어선원간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2022년 9월 「수산공익직불제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2023년 4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1월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사업계획·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후에 지급관리 및 사후관리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타 부처의 유사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농가·임가와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기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어업외 소득 일정금액을 제외하여 전업여부를 판단하며, 영세성을 어선업, 양식업, 신고어업의 어선 규모 또는 수입 등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원기준]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준 판단 내용
공통	① 종사기간	- ① 3년 이상 영어종사 어가(경영체) or ② 年 승선기록 6개월 이상 어선원
	② 전업여부	- 어업외 소득 일정금액(개인 2,000만원, 가구 4,500만원) 이하 * (어업) 어업 외 소득 1,431만원 / (농업) 농업 외 소득 1,788만원 ('21 농어가 경제조사, 통계청)
	③ 중복지급 제거	- 소농직불금 등 他 직불금 既수령자 지급대상 제외
소규모 어가	④ 영세성	- (어선) 어선5톤이하, (양식) 순어업수의 3천만원이하 ↳ 어업수의 3천만원*/年 수준 * 기초수급생활 기준인 4인가구 중위소득(6,145만원) 50%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21.7) - (신고) 해녀·맨손어업 등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준 판단 내용
어선원	⑤ 어업경영체와 유사성 (어선원 직불제 포함)	- 경영주와 공동으로 어업을 영위하면서, 공익을 창출하는 수산업 핵심 구성원 * ① 조업활동, 해난구조, ② 성과급 유사계약, ③ 장기고용·숙련도, ④ 위험, 상시근무
기타	⑥ 現직불 통합가능성	-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존치하되, 대상(19,000어가)은 축소(소규모어가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타 부처의 유사사업은 소규모 농가·임가에 대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생산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생산비례 직불제 등의 도입이 없어 다른 기본형 직불제도와 달리 정액으로만 지급된다. 이에 양식어업과 같이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 기준소득액을 약간 초과하는 어가는 소득이 더 낮은 어가에 비해 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구간 등에 해당하는 어가는 부정수급신청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그리고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은 시행예정법률상 동일 세대 여부를 기준으로 어가에 대한 직불금과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 소득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이전하여 쉽게 할 수 있는 편이므로, 법률상 제한을 비교적 쉽게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지침·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실제 주소·승선어선 등을 점검하여 사실상 동일한 어가에 대해 여러 명이 추가지원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읍·면·동이 아니라 실제 수산업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에서 편법·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읍·면·동에 비해 시·군·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sup>5)</sup>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절차·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해양수산부는 신규 직불제 시행시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나 업무부담이 예상되므로 직불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관계기관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수부,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읍·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규모어가 등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어가·어선원에 대해 연간 120만원을 정액지급할 예정인데, 양식어업 및 신고어업은 일부 소득구간간 소득역전 현상 및 이로 인한 부정수급신청 유인이 우려되고, 법률상 금지된 어가·어선원간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 공익직불제의 특성·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방식이나 구조, 사후관리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면· 등)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한 직불시스템 등 효율적인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 3-2.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료지원단가 검토 필요

#### 가. 현 황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동 사업에 따른 직불금은 ①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을 준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 또는 ② 국립수산물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19,273	25,597	25,597	27,865	2,268	8.9
친환경인증	4,878	9,220	9,220	9,220	0	0.0
배합사료	14,395	15,942	15,942	18,176	2,234	14.0
행정비	0	435	435	469	34	7.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 나. 분석의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 중 배합사료 직불금의 평균 지원단가는 예산(안) 기준으로 2022년 37만원/톤에서 2023년도 49만 5,000원/톤으로 33.8% 인상되었는데, 2021·2022년 실제 지원실적, 배합사료·생사료 인상추세 및 어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산출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중 100% 배합사료 사용여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은 배합사료 사용량, 배합사료-생사료간 가격차이, 출하지연계수(1.21) 및 보전비율(80%)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배합사

료 4만 3,099톤에 37만원/톤을 적용한 15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예산안으로는 배합사료 3만 6,720톤에 평균 지급단가 49만 5,000원/톤을 적용한 18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 계획에 비해 배합사료 신청 및 지원 평균 단가가 저조하여 2021년 실적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2022년 8월말 기준으로도 실적행률이 높지 않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적행률 (B/A)
		본예산	추경(A)								
친환경 수산물인증	2021	9,223	9,223	4,796	4,796	0	4,796	4,676	0	120	50.6
	2022	9,223	9,223	9,223	9,223	0	9,223	0	-	-	0
배합 사료	2021	15,946	15,946	14,151	14,151	0	14,151	8,612	0	5,539	54.0
	2022	15,946	15,946	15,010	15,010	0	15,010	4,421	-	-	27.7
합 계	2021	25,169	25,169	18,947	18,947	0	18,947	13,288	0	5,659	52.8
	2022	25,169	25,169	24,233	24,233	0	24,233	4,421	-	-	17.6

주: 2022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작성, 행정비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 집행률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 양식어가가 당초 예산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 신청되었고, 신청어가는 배합사료 중 지원단가가 높은 곤충사료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였다가, 실제로는 충분히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직불금 신청·지원 및 예산안 편성계획]

(단위: 개, 톤, 천원, 천원/톤)

구 분	어가 수	사료량(A)	금액(B)	평균 단가(B/A)	
2021년	신청현황		32,401	14,150,596	436.7
	곤충사료	324	10,649	6,490,556	609.5
	고품질		7,736	3,833,200	495.5
	일반		14,016	3,826,840	273
	지원현황		23,596	8,612,627	365
	곤충사료	285	3,115	1,652,421	530.5
	고품질		11,204	4,995,299	445.8
	일반		9,277	1,964,907	211.8

(단위: 개, 톤, 천원, 천원/톤)

구 분		어 가 수	사료량(A)	금액(B)	평균 단가(B/A)
2022년	신청현황	338	40,526	15,010,019	370.4
	곤충사료		27	16,138	597.7
	고품질		25,105	11,167,940	444.8
	일반		15,394	3,825,941	248.5
	지원현황	248	10,798	4,421,782	409.5
	곤충사료		752	443,852	590.2
	고품질		7,465	3,288,764	440.6
	일반		2,581	688,183	266.6
2023년	예산안 기준	339	36,720	18,176,583	495
	곤충사료		3,680	2,849,608	774.4
	고품질		19,010	10,574,312	556.2
	일반		14,030	4,752,663	338.8
	(합계)				

주: 1. 2022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행정비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동 사업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3,000만원 증액된 18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배합사료 단가가 2022년 37만원/톤 대비 49만 5,000원/톤으로 33.8%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3~4월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어분, 곡물)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밀 84%, 대두 18% 등) 하였으며, 배합사료 가격도 8% 수준 이상 인상되는 등 양식어가 경영상황과 100% 배합사료를 사용함에 따른 경영손실을 상쇄하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직불금 단가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불금 단가는 배합사료 가격 외에도 생사료 가격, 그리고 출하지연계수 및 보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동 예산안의 산출내역으로는 출하지연계수 및 보전율 등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배합사료와 생사료 간 가격차이는 생사료 가격이나 다른 지원 어종의 배합사료 단가 등은 고려하지 않고, 넓치 어종의 배합사료 단가 인상분만을 고려하여 산정<sup>6)</sup>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지원단가는 넓치 어종의 배합사료 단가 인상분만을 고려하였고, 면밀하게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21·2022년 실제 지원실적, 배합사료·생사료 인상추세 및 어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산출근거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해양수산부는 2019~2021년간 넓치기준 지원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이차보전액 부족분 발생 방지 필요

### 가. 현황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sup>1)</sup>은 수산정책자금(11종<sup>2)</sup>)을 저금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협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4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3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84,642	96,331	99,632	123,813	27,482	28.5
이차보전금 총계	84,642	96,331	99,632	105,800	6,168	5.8
2021년 부족액	-	-	-	18,013	18,013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으로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은 대출공급액을 조달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조달금리<sup>3)4)</sup>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로 어업인에게 용자를 제공하고 있으며<sup>5)</sup>, 해양수산부는 신규 대출평잔액 및 기존 대출평잔액에 각각 이차보전율(조달금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50-301
- 2) 양식어업 경영자금,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 어업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부채경감 대책자금,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어촌정착 지원자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자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수산물수매 지원자금
- 3)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35쪽  
이차보전예산 계산방법: [(운용규모×평잔율)×(조달금리+취급수수료율)-대출금리] - 재정자금 운용수익
- 4)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르면 이차보전율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며,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음)를 말하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이 중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지침상 조달금리, 취급수수료율 및 운용수익을 고려하여 설정된 값으로 볼 수 있는데,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동 보고서 내에서는 기준금리를 “조달금리”로 통칭한다.
- 5) 이차보전사업 집행절차

리-대출금리)을 곱한 값을 이차보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조달금리는 신용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와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로 나뉘고, 수협은행에서 업무원가율에 전월 월중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대부분 고정금리이며 내역사업별로 해양수산부가 정책목표 및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결정하고 있다. 다만,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및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sup>6)</sup>의 경우 2015년에 어민의 금리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고정금리 외에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상품이 도입되었고, 동 사업의 변동금리는 2015년 도입 당시 당정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의 가계담보대출금리 - 2%p”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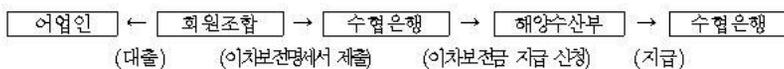
대부분의 내역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계획한 신규 대출공급액을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2023년도 동 사업의 전체 대출평잔액은 전년대비 514억 4,700만원 감소한 3조 9,336억 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달금리는 재원 종류에 따라 2022년 대비 0.09%p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 변동금리는 2023년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이차보전액은 전년대비 61억 6,800만원 증액된 1,058억원이다.

[2022년 본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조달금리]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B - A
신용자금	3.73%	3.82%	0.09%p
수산발전기금	3.20%	3.11%	△0.09%p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2021년도 이차보전액 부족액 180억 1,300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보전하기 위해 신규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자료: 해양수산부

6) 신고어업(「수산업법」 제47조), 마을어업(「수산업법」 제8조), 종묘생산어업(「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일종)은 각각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일종

## 나. 분석의견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2021년도 대출 변동금리 인하 및 조달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1년도 이차보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3년도 예산안에서 보전하려고 하는데, 부족액 발생 및 차차년도 예산안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및 수협은행은 금리산정방식 등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2017, 2018, 2021년 세 차례 예산액이 부족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차차년도인 2019, 2020년 예산액 및 2023년 예산안에 각각 이차보전 부족액을 반영하였다.

[2015~2022년간 이차보전 부족액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부족액(B)	부족율(B/A)
	본예산	수정(A)				
2015	81,717	81,717	102,659	54,129	-	-
2016	74,514	74,514	104,716	97,884	-	-
2017	79,105	79,105	85,484	85,478	5,523	7.0
2018	82,402	82,402	82,402	82,400	11,238	13.6
2019	103,530	103,530	103,530	102,597	-	-
2020	108,651	108,651	85,824	85,793	-	-
2021	85,118	85,118	85,118	84,642	18,013	21.2
2022	96,331	99,632	99,632	-	-	-

자료: 해양수산부

이 같은 이차보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조달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이차보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시 계획된 신규 대출공급액은 수협은행 지점 등에 공지되고, 수협은행 지점 등은 해당 금액에 이를 때까지 대출을 실행하며, 수산금융자금은 다른 대출유형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이므로 대출수요가 부족한 경우가 적어서, 매년 신규 대출공급액은 예산편성시 금액과 상당히 일치해왔다.

그런데 조달금리의 경우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예산편성 시보다 인상될 수 있고, 이 때 대출 변동금리가 그 인상폭보다 낮게 인상되는 경우 이차보전율이 예산편성시보다 증가하여 이차보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대출금리의 경우 고정금리는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결정된 값이 공고되어 해당 연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의 가계담보대출금리 - 2%p”로 결정되는데, 변동금리가 예산편성시보다 인하되는 경우 이차보전율이 증가하여 이차보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에는 대출평잔액이 예산편성시 추정액의 93.7%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 변동금리가 낮게 나타나면서 이차보전율(조달금리-대출금리)이 당초 예상한 2.13%에 비해 0.63%p 높은 2.76%로 나타나면서 이차보전액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1년 수산발전기금 재원의 조달금리가 예산편성시 보다 1.24%p 인하되었는데, 대출금리는 그 인하폭보다 크게 인하되었다.

[2021 예산편성시 및 실제 조달금리]

구 분	2021 예산편성시(A)	2021년 실제(B)	증감분(B-A)
신용자금	3.69%	3.86%	0.17%p
수산발전기금	4.75%	3.51%	△1.24%p

자료: 해양수산부

[2021 예산편성시 및 실제 이차보전율 현황]

구 분	2021 예산편성시(A)	2021년 실제(B)	증감분(B-A)
대출평잔(백만원)	4,003,747	3,737,888	265,057
이차보전율	2.13%	2.76%	0.63%p
이차보전액(백만원)	85,118	103,131	18,013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동 사업과 같이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사업 예산을 당해 연도 예산액 이상으로 집행한 후, 그 부족분을 차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015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이 같은 예산편성이 세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동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운용배수 내에서도 조달금리 및 대출 변동금리의 변동성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고, 이차보전 부족액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었던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자금의 수요에 대해 지원요건에 부합 시 지원해 오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구조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동 사업은 사실상 예산액을 해당 연도 사업의 이차보전액 상한으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실행된 대출 및 이차보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그 부족액을 차차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및 수협은행은 향후 동 사업의 대출평잔액,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를 면밀하게 예측하고 통제하여 예산액 내에서 이차보전액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조달금리와 대출 변동금리간 상관관계가 낮아<sup>7)</sup> 현행 금리 산정방식으로는 이차보전율을 예측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차보전액 집행액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8)</sup>. 특히 2021년도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비교적 낮게 유지<sup>9)</sup>되면서 대출 변동금리 역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데 비해, 수산발 전기금 조달금리는 그만큼 인하되지 못했고, 신용자금 조달금리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시장 여건을 조달금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수산부 및 수협은행은 이차보전 부족액 발생시 이를 차차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출 변동금리 또는 조달금리 산정방식 등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일반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대출승인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사업은 이차보전율을 정률로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사업은 변동금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가계대출금리를 참고하는 한편, 기준금리는 수협은행의 NIM, 종합원가를 고려하여 산출하므로 이차보전율이 일정하기 어렵다.

8) 해양수산부는 금융 시장 여건을 즉각 반영하는 변동금리에 비해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달금리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9) 한국은행 기준금리: (21.1.) 0.50% → (21.8.) 0.75% → (21.11.) 1.00%

## 가. 현황

해양모태펀드 사업<sup>1)</sup>은 유망 중소·중견 해양기업 투자 지원을 통해 해양신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총 1,000억원을 출자하여 민간에서는 430억원 이상의 재원을 유치하고,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첨단 기술 융합 분야 중소·벤처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삼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억원이 감액된 13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해양모태펀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모태펀드 출자	10,000	20,000	20,000	13,000	△7,000	△3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 계정으로 운용<sup>2)</sup>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① 정부재정으로 매년 해양모태펀드에 출자하고, ② 해양모태펀드와 민간이 자펀드를 조성하며, ③ 자펀드는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여, ④ 자펀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자펀드를 청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⑤ 그 금액으로 새로운 자펀드를 조성하여 재투자하게 된다.

[해양모태펀드 사업 집행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2031-313

2)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20년부터 개별 모태펀드를 계정 형태로 통합 운용(문화, 보건, 환경 등 총 19개)

## 나. 분석의견

해양모태펀드는 기존 출자액 중 자펀드 미납입액,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 및 신규 자펀드의 실제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현재 투자여력이 큰 상황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총 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은 모두 집행되어 총 700억원이 해양모태펀드로 출자되었다. 출자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이후 17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후, 최초로 결성된 자펀드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산·청산되어 투자금이 회수되면 신규 자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모태펀드 사업 출자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출자액	200	200	100	200	130	170	1,000

주: 2019~2022년간 동 사업 예산액은 모두 집행되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그런데 2019~2022년간 출자·결성된 자펀드의 결성액, 납입금액 및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기존 출자액 중 자펀드 미납입액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2022년 예산 200억원에 따른 자펀드는 결성 중이고, 그 외 2021년까지의 정부 출자금 500억원 중 자펀드로 납입된 금액은 342억원이며, 미납입금액은 158억원이다. 즉, 자펀드 관리를 위한 분할납부 방식으로 인해 2022년 출자금 200억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에 158억원이 자펀드로 납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이다.

한편 2022년 8월말 현재까지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현황을 고려하면,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330억원이고, 이 중 정부 납입액 비중(342억원/506.3억원)을 고려하면 정부 출자금으로 자펀드에 납입된 342억원 중 투자금은 223억원에 그치며, 107억원은 아직 투자되지 않았다. 민간 납입금까지 고려하는 경우 투자여력은 총 납입금 506억 3,000만원 중 176억 3,000만원이다.

따라서 2022년 8월말 현재 동 사업의 정부재원에 따른 투자여력은 2022년 자펀드 결성예정인 200억원, 아직 자펀드에 납입되지 않은 금액 158억원, 자펀드 정부납입금 중 미투자금액은 107억원이다.

[해양모태펀드 사업의 자펀드 조성·투자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펀드 운용사	캐피탈원	하이투자파트너스 (舊수립창업투자)	BNK 투자증권, 케이앤티투자 파트너스	인라이트 벤처스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	엔브이씨 파트너스 /마이더스동아 인베스트먼트
조성기간	'19.08.19. ~'27.08.18. (8년)	'19.10.08. ~'27.10.07. (8년)	'20.06.12. ~'28.06.11. (8년)	'21.01.04. ~'29.01.03. (8년)	'21.11.08. ~'29.11.07. (8년)	* 결성 중 (8년)
투자기간	존속기간내	존속기간내	투자기간 4년 ( '20.06.12 ~'24.06.11)	존속기간내	투자기간 3년 ( '21.11.08 ~'24.11.07)	* 결성 중
결성금액 (정부/민간)	145억원 (100/45)	150억원 (100/50)	155억원 (100/55)	143억원 (100/43)	143억원 (100/43)	300억원(예정) (200/100)(예정)
납입금액 (정부/민간)	145억원 (100/45)	120억원 (80/40)	124억원 (80/44)	45.8억원 (32/13.8)	71.5억원 (50/21.5)	- -
투자금액	103억원	85억원	71억원	37억원	34억원	-
주목적 투자금액	60억원	61억원	51억원	37억원	34억원	-
신산업 도약	45억원	56억원	25억원	37억원	-	-
전통산업 혁신	15억원	5억원	26억원	-	34억원	-

주: 투자금액은 2022년 8월 기준 작성  
자료: 해양수산부

2019~2022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정부납입금은 연평균 93.3억원, 정부재원 투자금은 60.9억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재원에 따른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유망한 중소·중견 해양기업 투자가 저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조성연도별 자펀드 납입·투자금 현황]

(단위: 억원)

조성연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정부납입금	180	112	50	-	342.0	93.3
민간납입금	85	57.8	21.5	-	164.3	44.8
투자금	188	108	34	-	330.0	90.0
정부재원 투자금	127.7	71.7	23.8	-	223.1	60.9

- 주: 1. 납입금 및 투자금은 2022년 8월 기준 작성  
 2. 정부재원 투자금은 정부납입금 및 민간납입금 비율에 따라 산출한 값임  
 3. 3년 8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연평균 금액 산출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매년 신규 결성되는 자펀드는 하반기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조성되었고, 2022년 8월 말 현재에도 신규 자펀드를 아직 결성 중이다. 운용사 공고(1개월), 운용사 선정(1개월) 및 운용사의 투자기업 선정(3~4개월)에 소요되는 최소기간과 그동안 소요된 신규 펀드 조성기간을 고려하면 2023년도 신규 자펀드도 상반기 내에 결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에 따른 기존 출자금 대비 투자금 비율이 높지 않다.

따라서 동 사업은 기존 출자금 중 자펀드 미납입액,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 및 신규 자펀드 실제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현재 투자여력이 큰 상황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sup>1)</sup>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억 9,800만원이 감액된 3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20,987	62,197	34,197	31,099	△3,098	△9.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해운법」 제41조제2항<sup>2)</sup>을 근거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석유가격합리화를 위해 인상<sup>3)</sup>한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연안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경유의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당시의 유류세 (183.21원)를 차감한 금액인 ① 유류세 보조금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 추세로 인해 2022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지원될 예정인 ② 유가연동보조금<sup>4)</sup>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59-300

2) 「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휘발유:경유:LPG 가격비율을 100:47:26(01.6)에서 100:85:50(07.7)으로 조정함

4) 시장가격과 기준가격(1,850원/ℓ → (7월 이후) 1,700원/ℓ)간 차액의 50%를 지원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고유가 추세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고, 인하조치를 연장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 단가도 함께 인하되고 있다. 당초 경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라 528.75원/ℓ로 정해져 있고, 수급상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유류세 보조금은 528.75원/ℓ과 2001년 6월 당시의 유류세(183.21원/ℓ)의 차액인 345.54원/ℓ이다.

이후 2021년 11월 12일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유류세는 423.0원/ℓ, 유류세 보조금 단가는 239.79원/ℓ로 인하되었고, 2022년 5월 1일부터 7월까지 유류세가 370.83원/ℓ로 30% 인하되어 유류세 보조금도 함께 187.62원/ℓ로 인하되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는 역대 최대폭인 37%를 인하하여 335.58원/ℓ이며, 유류세 보조금 단가는 152.37원/ℓ로 지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조치 현황]

(단위: 원/ℓ)

구분	시행일	유류세(A)	석유가격구조 개편 전 유류세(B)	유류세 보조금 (A-B)	비고
기존	-	528.75	183.21	345.54	
1차	2021.11.12.	423.00		239.79	20% 인하
2차	2022. 5. 1.	370.83		187.62	30% 인하
3차	2022. 7. 1. (~2022.12.31.)	335.58		152.37	37% 인하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2022년 5월에 시장가격과 기준가격<sup>5)</sup>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이 신설되어 제2차 유류세 인하조치와 함께 3달간 한시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연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현재 연안화물선은 경유 구입시 동 사업으로 유류세 보조금 152.37원/ℓ,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77.43원/ℓ을 지원받는다<sup>6)</sup>.

5) 1,850원/ℓ → (7월 이후) 1,700원/ℓ

6) 참고로 2021년 1월부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급하는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추가로 78.96원/ℓ 감면하고 있다.

[선박용 경유 가격 추이]

(단위: 원/ℓ)

시기	판매가	유류세 보조금/감면	사용자 실부담(A)
2019.11	1,262.08		916.54
2020.1	1,276.57	345.54	931.03
2020.6	909.75		564.21
2021.1	1,047.80		623.30
2021.6	1,201.69	424.5 (345.54 <sup>1)</sup> /78.96 <sup>2)</sup>	777.19
2021.9	1,250.75		826.25
2021.12	1,280.40	318.75 (239.79 <sup>1)</sup> /78.96 <sup>2)</sup>	961.65
2022.3.	1,426.48		1,107.73
2022.6.	1,806.56	370.83 (187.62 <sup>1)</sup> /78.96 <sup>2)</sup> /104.25 <sup>3)</sup>	1,435.73
2022.9.	1,689.02	308.76 (152.37 <sup>1)</sup> /78.96 <sup>2)</sup> /77.43 <sup>3)</sup>	1,380.26

- 주: 1)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류세 보조금 단가 인하 : (~'21.10.) 345.54원/ℓ, ('21.11.~'22.4.) 239.79원/ℓ, ('22.5.~'22.6.) 187.62원/ℓ, ('22.7.~'22.12.) 152.37원/ℓ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기존 유류세 보조금 외에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급하는 경유의 유류세 감면 추가(78.96원/ℓ) 시행중  
 3) 한시적 유가연동 보조금 : (시장가격 - 기준가격)×50% / 지급한도 183.21원/ℓ(한국해운조합 유류세 감면(78.96원/ℓ) 시 지급한도 104.25원/ℓ) / ('22.7.~) 기준가격 1,700원/ℓ / ('22.5.~) 기준가격 1,850원/ℓ, ('22.6.~) 기준가격 1,750원/ℓ, ('22.7.~) 기준가격 1,700원/ℓ

자료: 한국해운조합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즉시 종료되고 유류세 보조금 단가가 2021년 11월 이전인 345.54원/ℓ로 즉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유류세 인하조치 유지를 전제로 한 세입예산안과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또는 단계적 인상가능성을 고려하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제 유가 추세, 유류세 인하 조치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2022년 본예산 편성시 예상한 유류비 보조 경유량 대비 경유 사용량이 저조했던 추세를 반영하여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가정한 보조 경유량 추정값(9~10만ℓ)과 유사한 9만ℓ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0~2023년 유류비 보조 경유량 현황·전망 및 관련 규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예산편성시 예상한 유류비 보조 경유량	72,900kl	221,315kl	(본예산) 18만kl (추경) 9~10만kl	9만kl
실제 보조 경유량(kl)	49,757	60,737	81,392(추정) * 40,696(상반기)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예산정책처 재작성

또한 유류세 보조금 단가는 유류세 인하조치의 시행기간이 2022년도 연말까지 이므로, 유류세 인하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2021년 11월 이전 수준(345.54 원/kl)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에도 유류세 인하조치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시 유류세(가)가 2022년도에 비해 27.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9)</sup>). 이를 감안하면 세입예산안과 달리 세출예산안은 유류세 인하조치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유류세 보조금 단가를 높게 추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7)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로 구성됨

8) [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2023 예산안	구성비 (%)	2022 예산	구성비 (%)	증(△)감	
					증(△)감	증감율 (%)
3.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00,000	2.5	15,380,500,000	3.6	△4,233,400,000	△27.5

자료: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9) 연합뉴스, 2022.9.12.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할까...약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가되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31400002?input=1195m>

또한 기존에 유류세 인하조치를 해소할 때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다시 인상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에도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sup>10)</sup>, 현재 유류세 인하조치는 역대 최대폭인 37%이므로 단계적 인상 가능성 등을 배제한다면 예산안과 실제 집행액간 오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유가 추세 및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선례를 고려할 때 2023년 1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즉시 폐지되고 유류세 보조금 단가가 2021년 11월 이전인 345.54원/kℓ로 즉시 인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유가 추세 및 실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가능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0) 연합뉴스, 2022.9.12.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할까…약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  
앞서 정부는 2018~2019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을 때도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7%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진행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31400002?input=1195m>

## 가. 현황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 등 5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으로, 그 외 4개 계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1,055억 3,200만원이 증액된 2,23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전년대비 예산안 증액분이 가장 큰 세입 과목은 항공항만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이고, 이들의 증액분 합계는 893억 1,500만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세입 증액분 1,055억 3,200만원 중 84.6%에 해당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2023년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예산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sup>1)</sup>		(B-A)	%
총 계	132,939	117,764	117,764	223,296	105,532	89.6
토지대여료[51-511]	49	489	489	1,282	793	162.2
건물대여료[51-512]	71	722	722	794	72	10.0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1	128	128	615	487	380.5
정부출자수입 [52-521]	7,258	1,931	1,931	4,280	2,349	121.6
기타 민간이자 수입[54-544]	0	0	0	4	4	0.0
기타재산수입[54-545]	730	0	0	0	0	0.0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0	1,103	1,103	3,761	2,658	241.0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0	613	613	0.0
벌금및과료[56-561]	1	1	1	28	27	2700.0
과태료[56-563]	236	193	193	225	32	16.6
과징금[56-565]	99	15	15	52	37	246.7
변상금 [57-571]	453	425	425	771	346	81.4
위약금 [57-572]	282	414	414	4,019	3,605	870.8
가산금 [58-581]	60	84	84	199	115	136.9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5,668	13,976	13,976	31,132	17,156	122.8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예산		2023 예산(B)	증 감	
		본예산(A)	추경 <sup>1)</sup>		(B-A)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17,358	14,391	14,391	16,547	2,156	15.0
<b>항공항만수입[67-671]</b>	<b>89,115</b>	<b>79,457</b>	<b>79,457</b>	<b>146,375</b>	<b>66,918</b>	<b>84.2</b>
<b>기타잡수입[69-691]</b>	<b>478</b>	<b>1,422</b>	<b>1,422</b>	<b>6,663</b>	<b>5,241</b>	<b>368.6</b>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272	125	125	667	542	433.6
토지매각대[72-721]	800	2,857	2,857	5,237	2,380	83.3
재고자산매각대[73-731]	8	31	31	32	1	3.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 나. 분석의견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중 주요 증액 세입원인 항공항만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잡수입은 2020년 또는 2021년 세입예산액에 물가상승률(3%)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는데, 최근 결산내역을 고려하면 과다추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세입 재원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항공항만수입은 접안료, 정박료, 선박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수납하려는 세입과목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기 전인 2020년 예산액 1,339억 5,400만원<sup>1)</sup>에 물가상승률(3%)을 적용한 1,463억 7,500만원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2017~2021년)간 항공항만수입은 연평균 1,076억 6,900만원 수납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수납액은 1,170억 6,200만원<sup>2)</sup>이었는데, 2020년 과다계상되었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3년도 예산안 역시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높다.

1) 2020년도 예산액은 2016~2018년간 수납액 평균값으로 추산하였다.

2) 해당 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3%)를 적용하면 2023년도 항공항만수입은 1,317억 5,400만원으로 추정됨

[2017~2023년간 항공항만수입 예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7	152,046	152,046	152,046	151,715	142,661	93.8	94.0	9,033	21
'18	156,607	156,607	156,607	142,715	134,134	85.7	94.0	8,582	-
'19	161,305	161,305	161,305	126,288	117,062	72.6	92.7	9,226	-
'20	133,954	133,954	133,954	102,391	92,464	69.0	90.3	9,912	15
'21	137,792	137,972	137,972	60,078	52,022	37.7	86.6	8,056	-
'22	79,457	79,457	79,457	68,298	59,944	75.4	87.8	8,354	-
'23(안)	146,375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둘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환수 등 연체료·반환금 등을 수납하는 세입과목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93억 4,500만원<sup>3)</sup>에 대해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311억 3,200만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5년(2017~2021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평균 172억 800만원 수납되었는데, 2022년도에 특히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사업 등 별도 세입증가 요인이 없으므로, 2023년에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에 비해 1.8배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7~202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7	37,291	37,291	37,291	35,407	32,403	86.9	91.5	2,995	8
'18	38,410	38,410	38,410	22,369	19,270	50.2	86.1	3,099	-
'19	39,562	39,562	39,562	20,691	17,594	44.5	85.0	3,097	-
'20	28,490	28,490	28,490	8,140	5,065	17.8	62.2	3,073	1
'21	29,345	29,345	29,345	14,819	11,706	39.9	79.0	3,113	-
'22	13,976	13,976	13,976	10,921	7,849	56.2	71.9	3,072	-
'23(안)	31,132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3)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3%)를 적용했고, 2020년 예산액은 2016~2018년간 평균 수납액((33,797+32,403+19,270)/3=28,490백만원)으로 추산함  
참고로 2022년도 예산액은 2018~2020년간 수납액 평균값으로 추산함

셋째, 기타잡수입은 기타 재화(선박·하역장비 노후부품 교체 등) 및 용역 판매에 따른 수입을 수납하려는 세입과목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62억 8,100만원<sup>4)</sup>에 대해 물가상승률(3%)을 적용한 66억 6,300만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5년(2017~2021년)간 기타잡수입은 연평균 41억 8,200만원 수납되었고, 2018, 2019년에 발생한 일시적인 세입증가분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12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3년에 일시적인 세입증가분이 없다면 12억 5,400만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징수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비해 5.3배에 해당하는 66억 6,300만원이 수납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보인다.

[2017~2023년간 기타잡수입 예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7	4,336	4,336	4,336	3,177	1,637	37.8	51.5	1,531	10
'18	5,748	5,748	5,748	9,265	7,950	138.3	85.8	1,314	-
'19	5,920	5,920	5,920	9,413	8,424	142.3	89.5	988	-
'20	6,098	6,098	6,098	3,583	2,605	42.7	72.7	978	-
'21	6,281	6,281	6,281	1,279	295	4.7	23.1	983	-
'22	1,422	1,422	1,422	1,894	913	64.2	48.2	983	-
'23(안)	6,663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즉, 세입과목들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2018~2021년간 결산 결과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했는데, 앞서 검토한 3개 외에 상당수 세입과목들도 2021년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3%)을 적용하여 추산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실제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추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3%)을 적용했고, 2020년 예산액 역시 전년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3%)을 적용한 값임  
참고로 2022년도 예산액은 일시적인 세입 증가분(2018년 평택청 부가가치세 환급금(6,720백만원) 및 2019년 GS칼텍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 이행(7,922백만원)을 제외한 3개년도(2018~2020년) 평균 수납액임





## 농촌진흥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5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억원(△9.1%)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918	11,662	11,662	12,458	796	6.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0	1,718	1,718	1,295	△423	△24.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31	1,227	1,227	-	△1,227	순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30	2,934	2,934	2,190	△744	△25.4
합 계	18,269	17,541	17,541	15,943	△1,598	△9.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2,52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54억원(9.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9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05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76,554	1,068,872	1,026,673	1,149,273	122,600	1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632	28,135	28,135	22,777	△5,358	△19.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763	92,323	92,323	80,475	△11,848	△12.8
합 계	1,093,949	1,189,330	1,147,131	1,252,525	105,394	9.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15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억원(△9.1%)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918	11,662	11,662	12,458	796	6.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0	1,718	1,718	1,295	△423	△24.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31	1,227	1,227	-	△1,227	순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30	2,934	2,934	2,190	△744	△25.4
합 계	18,269	17,541	17,541	15,943	△1,598	△9.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52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54억원(9.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9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05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76,554	1,068,872	1,026,673	1,149,273	122,600	1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632	28,135	28,135	22,777	△5,358	△19.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763	92,323	92,323	80,475	△11,848	△12.8
합 계	1,093,949	1,189,330	1,147,131	1,252,525	105,394	9.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한편,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다. 재정구조**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 간 재원이전은 없다.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세입		세출	
124		11,49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13		22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22		805	

자료: 농촌진흥청

2023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바이오 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 기술 개발(R&D) 등 6개 사업의 종료로 498억원이 축소 편성되었고 ②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등 농산업 현장 문제해결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으며(2022년 3,222억원 → 2023년 3,743억원), ③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 예산이 증액되었고(2022년 1,552억원 → 2023년 1,569억원), ④ 농업·농촌 활력 제고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2022년 1,033억원 → 2023년 1,067억원).

2023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은 계획수립 미흡 등으로 인해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발농업기계화와 관련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발농업기계화율은 파종·정식 작업이 12.2%, 수확작업이 31.6%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발농업기계화율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농촌진흥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5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R&D) 사업은 표현형 중심 농생명 딥데이터 기반 국가 육종 플랫폼 기술을 통하여 딥데이터 기반 육종 기술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범국가적 육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사업은 발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를 통하여 고효율 농작업을 위한 복합작업형 발작물 농기계 개발, 발농업기계의 다품목 이용을 위한 범용화 기술 개발, 신개발 다목적 발농업기계의 보급을 위한 표준화, 검·인증 및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R&D)	4,511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1,275
합 계		5,786

자료: 농촌진흥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축산자원 개발부 이전사업, 농업정책 지원기술개발 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등이 있다.

① 축산자원 개발부 이전사업(R&D)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에 축산자원개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가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농업정책 지원기술개발 사업(R&D)은 간척지 첨단 농업기술 개발 연구(20억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대응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연구(41억원), 꿀벌 강건성 연구(15억원)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대폭 증액되었고, ④ 신기술보급사업은 밀·

콩·쌀가루 등 우수 품종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 등을 위한 식량 자급률 향상 예산이 증액 되었고 ⑤ 과학 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은 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 신규 내역 사업으로 증액 되었으며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예산이 증액되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 A
일반회계 (11개)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	31,943	16,676	93,976	77,300	463.5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	25,495	25,495	39,892	14,397	56.5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35,345	35,345	43,788	8,443	23.9
	치유농업 연구소 기반구축	1,000	1,000	7,200	6,200	620.0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27,252	26,797	33,417	6,620	24.7
	신기술보급사업(보조)	48,919	48,829	55,019	6,100	12.5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14,305	14,305	19,711	5,406	37.8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R&D)	1,680	1,680	5,655	3,975	236.6
	신소득유망이열대작물실증센터기반구축	5,610	1,410	8,810	7,400	524.8
	노지디지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8,000	8,000	10,700	2,700	33.8
	반려동물전주기고도화기술개발(R&D)	1,000	1,000	3,350	2,350	23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 1

##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현 황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sup>1)</sup>은 치유농업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관(치유농업 연구소) 설립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서비스 품질관리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치유농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억원이 증액된 72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치유농업 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2	1,000	1,000	7,200	6,200	62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치유농업<sup>2)</sup>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2020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h@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36-330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3.25.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에서 치유농업 확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 확산을 위하여 추진되는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306㎡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치유농업연구소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토지보상비 13억 9,900만원, 공사비 50억 7,300만원 등 총 72억원이 편성되었다.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치유농업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치유농업연구소)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 (사업위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3외 16필지
- (사업규모) 부지면적 16,769㎡, 연면적 6,306㎡(지하 1층·지상 3층)
-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240, 지방비 60)
- (사업기간) '21년~'24년
- (시설용도) 교육연구시설



자료: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 7,200백만원> ○ 토지보상비: 1,399백만원 ○ 설계비 : 248백만원 - 인허가 용역비 : 39백만원×1식=39백만원 - 실시설계비 : 209백만원×1식=209백만원 ○ 공사비 : 5,073백만원 ○ 감리비 : 400백만원 ○ 시설부대비 : 80백만원
---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은 계획수립 미흡 등으로 인해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21년도에 치유농업연구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비하여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6월이 되어야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건립부지도 같은 해 7월에 선정되었다. 그 결과 2021년도 예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9억 6,400만원 중 200만원만 집행되고 9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 0.2%의 집행률을 보였다.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예산집행·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예산	집행	불용	예산	집행	예산안	이후
<총사업비(합계)>	29,996	964	2	962	4000	3,303	10,200	15,080
1. 공사비	18,758	-	-	-	-	-	5,073	13,685
2. 토지보상비	7,399	-	-	-	3,000	3,000	4,399	-
3. 시설부대경비	3,239	964	2	962	1,000	303	728	795
○설계비	1,964	964	2	962	1,000	303	248	-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예산	집행	불용	예산	집행	예산안	이후
○감리비	1,075	-	-	-	-	-	400	675
○시설부대비	200	-	-	-	-	-	80	120
4. 예비비	600	-	-	-	-	-	-	600
〈재원분담(합계)〉	29,996	964	2	962	4,000	3,303	-	-
○국고	23,996	964	2	962	1,000	303	7,200	-
○지방비	6,000	-	-	-	3,000	3,000	3,000	-

주: 국고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 농촌진흥청

[2021년~2022년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연도	월	추진현황	비고
2021	3월	치유농업 육성 업무협약 치유농업 연구소 설립부지 선정 요청	농진청, 경상남도 등 농진청→경상남도
	4월	연구소 건립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전약정 신청	부지확정 후 본약정 체결
	5월	연구소 조성 기본계획 수립 건립부지 선정공모(5.10.~6.3.)	농진청 경상남도
	6월	수시배정 대상사업 예산배정(6.1.)	
	7월	건립부지 선정결과 제출(7.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준비	경상남도→농진청 농진청
	8월~9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9월~10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조달청
	10월~12월	설계공고 및 유찰(무응찰)	-
2022	1월	치유농업연구소 설계 용역 선정 및 계약	조달청
	2월	설계용역 기본설계 착수	
	3월	사업대상부지 협의보상 협약 추진	한국부동산원
	4월	설계용역 중 계획설계 완료	조달청
	5월	설계용역 중간설계용역 착수	
	8월	설계용역 중간설계 용역 완료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기본설계 용역을 2021년 12월에 공모하였으나 유찰(무응찰)되었고, 2022년 1월에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8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동 사업의 변경계획에 따르면, 2022년 11월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완료하고 2023년 7월에 착공하며, 공사 준공 시점을 2024년 9월에서 2025년 12월로 연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건축 사업의 변경계획]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기본계획 수립		'21. 1.~'21. 3.	'21. 3.~'21. 5.
부지 공모		'21. 3.	'21. 5.~'21. 6.
부지 선정		'21. 4.	'21. 7.
공공건축 사전검토		'21. 4.~'21. 5.	'21. 8.~'21. 9.
인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21. 7.~'22. 8.	'22. 2.~'23. 3.
	재해영향평가	'21. 7.~'22. 8.	'22. 2.~'23.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1.11.~'22. 8.	'22. 2.~'23. 3.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1. 7.~'21.10.	'22. 8.~'22. 9.
설계 용역	계획설계	'21. 8.~'21.11.	'22. 2.~'22. 4.
	중간설계	'21.12.~'22. 3.	'22. 5.~'22. 8.
	실시설계	'22. 3.~'22. 6.	'22. 11.~'23. 3.
사업대상부지 협의보상		'22. 3.~'23. 1.	'22. 6.~'23. 6.
공사 착공		'22.11.~	'23. 7.~
완공		'24. 9.	'25. 12.

자료: 농촌진흥청

그런데 실시설계의 경우 올해 9월에 착수한 중간설계 적정성 평가(조달청 주관)가 끝난 후인 11월<sup>3)</sup> 이후에 시작할 수 있고,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촌진흥청은 기본조사설계비 잔액을 활용하여 2022년도내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sup>4)</sup>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충분한 설

3) 농촌진흥청은 중간설계 적정성 평가 완료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계기간을 부여하여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고, 동 지침 [별표 1]에서는 사업비가 100~500억원인 건축물의 경우 실시설계 기간을 최소 7.5개월<sup>5)</sup>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내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3월에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실시설계 후 조달청의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토지보상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농촌진흥청이 계획한대로 2023년도 7월에 착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부지 선정의 지연과 구체적인 계획수립 미비로 인해 현재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어 준공시점이 1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치유농업연구소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확산 및 신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치유농업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은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설계기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이하 "설계"라 한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5) 여기서 실시설계 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농업 기계화율 제고 필요

### 가. 현황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사업<sup>1)</sup>은 발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발농업기계화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12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3년도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0	0	0	1,275	1,27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sup>2)</sup>되면서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발농업 주요 품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발농업기계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 국정과제(발농업 기계화 기술 개발·보급) 및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2~'26)」(발농업 기계화 촉진)에 이 사업이 포함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발농업 주력 품목별 기계화 촉진을 통한 인력 수급, 노동력 절감 등 농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작물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 농작업기계, 범용 농작업기계 등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21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h@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36-344

2)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 : ('15) 43.8% → ('19) 51.1%

###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발농업 주력 품목별 기계화 촉진을 통한 인력 수급, 노동력 절감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수요 기반의 발농업기계 기술개발 지원
- (사업기간 및 예산) '23~'27년(5년), 218억원
- (사업내용) 작물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농작업기계, 범용 농작업기계 등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개발
- (지원형태) 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등
- (연구목표) 복합작업 및 범용 발작물 농기계 8종 이상 개발 등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이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3개 과제의 9개월분인 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다.

###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R&D)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 현장맞춤형 다목적 발농업기계 개발 : 1,275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3개×566백만원×9/12개월= 1,275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 나. 분석의견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발농업기계화와 관련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발농업기계화율은 파종·정식 작업이 12.2%, 수확 작업이 31.6%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발농업기계화율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발농업의 경우 작물별로 작업단계가 상이하여 여러 발작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업기계를 개발하기가 어려워 기계 개발의 수익성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에서는 개발할 유인이 적어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 발작물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촌진흥청 발작물기계화 관련 연구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작업단계	'11~'15	'16	'17	'18	'19	'20	계
경운·정지	1,658	490	470	940	744	803	5,105
파종·정식	1,914	350	920	695	534	145	4,558
수확	2,175	820	690	683	838	665	5,871
제조·방제	238	350	150	706	629	921	2,994
계	5,985	2,010	2,230	3,024	2,745	2,534	18,528

자료: 농촌진흥청, 발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기획보고서, 2022.5.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작물기계화 관련 연구 예산으로 185억 2,800만원을 투입<sup>3)</sup>하였지만, 발농업기계화율은 2020년 기준으로 61.9%로 논농업 기계화율 98.6%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발농업기계화율은 2016년 58.4%, 2018년 60.2%, 2020년 61.9%로 증가 추세이나, 일부 작업단계는 기계화율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경운·정지<sup>4)</sup> 단계의 경우 기계화율이 99.6%로 완성단계이나, 파종·정식 작업은 12.2%에 불과하며, 수확 작업도 31.6%로 낮은 수준이다.

[농업기계화율 비교]

(단위: %)

구 분	논농업	발농업
작업내용	경운·정지, 이앙, 방제, 수확, 건조	경운·정지, 파종·정식, 바늘피복, 방제, 수확
기계화율 <sup>1)</sup> (2020년 기준)	98.6	61.9

주: 1) 농업기계화율은 '96년부터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조사하며, 2022년 발농업 및 논농업 기계화율은 2022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농촌진흥청

3) 농촌진흥청의 발농업 기계화 연구 사업의 주요성과를 보면, 2015년에 고구마 반자동 정식기 개발, 2017년 감자파종기 개발, 2019년 무 파종기·수확기 등 개발, 2021년에 조파식 마늘파종기 등을 개발하였다.

4) '경운(耕耘)'은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토양을 갈아서 지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고, '정지(整地)'는 토양을 모종을 심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작업 등을 말한다. '파종(播種)'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정식(定植)'은 작물을 심은 후 끝까지 그대로 재배할 장소에 최종적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의미한다.

[연도별 밭농업 작업별 기계화율]

(단위: %)

연 도	평 균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 제	수 확
2014	56.3	99.8	5.0	67.6	95.8	13.3
2016	58.4	99.9	9.5	66.8	92.0	23.9
2018	60.2	99.8	9.5	71.1	93.7	26.8
2020	61.9	99.6	12.2	73.0	93.2	31.6

자료: 농촌진흥청

밭농업의 경우 작물의 종류와 지역별 재배양식이 다양하고, 주로 중산간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농지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율이 낮아 기계화율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5)</sup>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밭작물 생산의 기계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통해서 밭농업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계·기술 개발을 통해 밭농업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할 필요<sup>6)</sup>가 있다.

5) 특히 파종·정식 및 수확 관련 기계의 경우 종자와 모의 형상이 작물에 따라 다양하여 고정밀·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바 다른 작업단계에 비해 기계화가 어려운 편이다.

6)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밭농업기계화 개발 및 기계보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구 분	지적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시정요구('21.09)	밭농업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연구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 확대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21.10)	밭농업기계화 개발 및 보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산림청



## 1

##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20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4억원(5.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7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5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산림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3,722	94,132	94,132	92,016	△2,116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9,949	284,970	284,970	307,876	22,906	8.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665	19,902	19,902	20,496	594	3.0
합 계	491,336	399,004	399,004	420,388	21,384	5.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4,47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81억원(2.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41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32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2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4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산림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00,554	1,305,035	1,296,865	1,341,786	44,921	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0,978	721,569	706,631	732,068	25,437	3.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3,121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9,651	303,745	315,712	302,848	△12,864	△4.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0,647	59,940	59,797	70,425	10,628	17.8
합 계	2,504,951	2,390,289	2,379,005	2,447,127	68,122	2.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산림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1,41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92억원(4.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78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8억원이다.

[2023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3,722	94,132	94,132	92,016	△2,116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33,106	930,125	937,154	977,975	40,821	4.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7,367	61,435	61,292	71,783	10,491	17.1
합 계	1,124,195	1,085,692	1,092,578	1,141,774	49,196	4.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2,63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57억원(△1.1%)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107억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9,78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2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8억원이다.

[2023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85,390	1,986,099	1,984,815	1,910,682	△74,133	△3.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6,808	930,125	937,154	977,975	40,821	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3,121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9,651	303,745	315,712	302,848	△12,864	△4.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1,962	61,435	61,292	71,783	10,491	17.1
합 계	3,266,932	3,281,404	3,298,973	3,263,288	△35,685	△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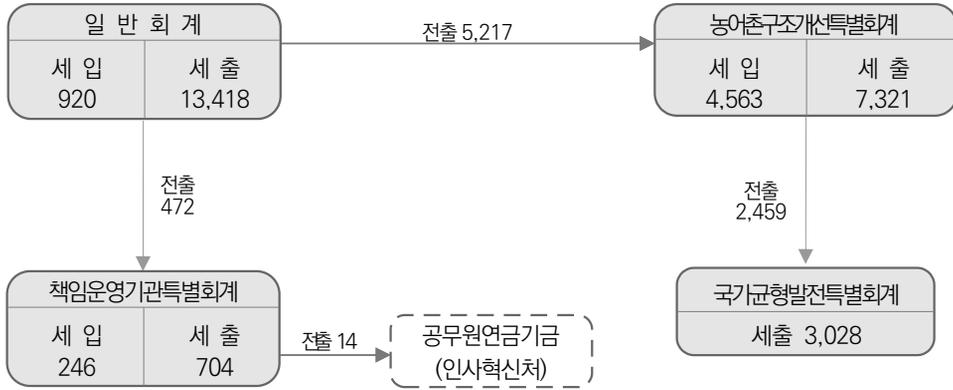
#### 다.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산림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21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72억원이 전출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459억원이 전출되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4억원이 전출된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산림청

2023년도 산림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재정투자 내실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산림청 소관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2022년 500억원 → 2023년 200억원), ②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2022년 501억원 → 2023년 839억원) 및 산림헬기 도입(2022년 150억원 → 2023년 585억원)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③ 산림 휴양·등산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 조성(1차 년도 42km, 15억원) 및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6억원) 등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7,660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에 2,282억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원,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6,295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증진 1,313억원, 국제산림협력 및 R&D 분야에 1,808억원을 편성하고,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에 2,34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은 매수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통해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나, 현재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3년도에 구축하는 스마트 양묘시스템 1개소가 연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시설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어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34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R&D)’ 사업은 지구 온난화로 꿀벌 서식지 및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 및 식량안보를 위해 농진청, 환경부, 기상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다부처 사업이고,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R&D)’ 사업은 바이오산업 핵심 원재료인 산림생물을 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원료 대중국 수입 의존도 개선 및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도심으로 맑고 찬 공기를 끌어들이어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도시 외부로 배출시키는 사업이며, 자율, 제주, 세종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R&D)	900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R&D)	2,4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개)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31,000
	도시바람길숲 조성(제주)	250
	도시바람길숲 조성(세종)	250
합 계		34,800

(단위: 백만원)

자료: 산림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산림헬기 도입·운영,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조림 등이 있다.

①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은 대형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 도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은 지난 14년 동안 동결되었던 사유림 매수 단가가 인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조림 사업은 '22년 봄철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지(경북 울진 등)에 대한 복구조림 비용이 반영되어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개)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기반연구(R&D)	3,550	3,505	7,550	4,045	115.4
	산림생명산업	13,000	3,000	14,525	11,525	384.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2,565	2,565	5,235	2,670	104.1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	1,300	1,300	2,539	1,239	95.3
	청사시설관리	2,161	2,161	3,758	1,597	73.9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R&D)	6,480	6,480	9,450	2,970	45.8
	산림복원	21,342	21,342	30,980	9,638	45.2
	산림헬기 도입·운영	77,351	82,851	110,804	27,953	33.7
	산림기반 사회문제해결 실증 기술개발(R&D)	3,900	3,900	5,200	1,300	33.3
	국유림 확보 및 관리	49,646	49,417	65,152	15,735	31.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5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자보전)	5,747	5,747	12,919	7,172	124.8
	목재산업육성	10,169	10,169	20,568	10,399	102.3
	산림병해충방제	91,097	96,396	109,685	13,289	13.8
	조림	129,145	121,745	150,397	28,652	23.5
	숲가꾸기	230,772	240,135	253,866	13,731	5.7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임도시설(자율)	70,359	70,359	81,278	10,919	15.5
책임 운영기관 특별회계 (1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27,320	27,320	36,126	8,806	32.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 1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 가. 현 황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sup>1)</sup>은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영세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 상승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9,000만원 증액된 7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유림 확보 및 관리	47,098	49,646	49,417	65,152	15,735	31.8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142	4,350	4,350	7,540	3,190	73.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만 추진해오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하고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방식을 도입하였다.

「국유림법 시행규칙」은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자율은 2.0%, 지가상승률은 2.85%로 산정하고 있다.<sup>2)</sup>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543-302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의 매수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의 매수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매수 목표 면적은 728ha 이었는데 매수 실적은 67ha로 계획 대비 실적은 9.2% 수준이었고 집행률은 본예산 22억 7,7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도 6.2%로 저조하였다.

산림청은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주에게 초기 현금 지출이 크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1회차분 분할 지급시 매매대금의 20%를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10년간 균등분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였지만, 2022년도에도 9월말 기준 계획한 매수면적 1,422ha 대비 실적은 79ha 수준(실적 5.6%)이고, 예산집행은 43억 5,000만원 중 5억 5,100만원이 집행(실적 12.7%)되고 있다.

[분할지급형 매수계획 및 실적]

(단위: ha, 백만원, %)

구 분		면적			예산		
		계획 (A)	실적 (B)	비율 (B/A)	계획 (C)	집행액 (D)	집행률 (D/C)
일시 지급형	2021년	6,654	3,468	52.1	33,273	35,802	107.6
	2022년 9월	6,254	2,763	44.2	31,273	28,553	91.3
분할 지급형	2021년	728	67	9.2	2,277	142	6.2
	2022년 9월	1,422	79	5.6	4,350	551	12.7

주. 실제 매수 단가가 계획 대비 높아 면적 매수율 대비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남  
자료: 산림청

### 2)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지급액 구성	내용
지급방식	- 10년(120개월) 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이체 - 감정평가에 따른 매매대금의 균등 지급액
월 지급액	- 월별 이자액(2.0%) - 월별 지가상승보상액(상승률 2.85%)

자료: 산림청,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2022.1.19.

한편,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수 단가 차이로 인해 2021년도 매수 면적 실적은 52% 수준이나 예산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산주의 사유림매도 수요가 낮지는 않은 상황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2021년 사업 근거 법령 개정이 지연(7월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본격 추진되었고, 대국민 인식이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긴 하나, 2022년도의 사업 실적 추이를 살펴볼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전문가 의견조회, 정책고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sup>3)</sup>을 시행(22.9.20.)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 개선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있어서도 산림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 예산을 매수 목표 수량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데, 동 사업과 유사하게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연금 사업<sup>4)</sup>과 같이 기존 누적 가입건수 및 추정 신규 가입건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산출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사업 산출내역과의 비교]

부처	사업명	세부산출내역
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 매수 12개월×595백만원 = 7,540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용자)	- 기존 가입 : 959천원 <sup>1)</sup> ×13,361건 <sup>2)</sup> ×12개월 = 153,758백만원 1) '21년 기존 가입 결산단가 적용 2) '22년말 유지 예상 = '21년말 유지건수+'22년 추정가입건수 - '22년 추정해지건수 - 신규 가입 : 1,214천원 <sup>3)</sup> ×2,829건 <sup>4)</sup> ×6.5개월 = 22,324백만원 3) '21년 신규가입 결산단가 적용 4) '23년 신규가입 = '22년 신규가입 예상건 ×최근 3개년 신규 가입건수 증감율

자료: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3) ① 선지급 비율 20%→40% 이내로 상향, ② 매수기준단가 제한 삭제, ③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명칭을 '산지연금형'으로 변경

4)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0

## 가. 현황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sup>1)</sup>은 목재수확 시 산주가 존치하는 산림 면적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1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목재생산관리	4,464	7,522	7,522	8,691	1,169	15.5
친환경 목재생산	-	-	-	1,125	1,12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나무 종류별로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 면적 기준을 규정하는데, [별표3]<sup>2)</sup>에서는 그 벌채면적 기준으로 벌채구역 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 10% 이상의 산림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주가 벌채면적의 10%보다 추가로 남기는 면적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인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주가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통상 벌채면적의 30% 수준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평균 벌채 면적 중 추가 산림 잔존분인 20%를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540-300의 내역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 벌채기준

(2) 모두베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립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①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독립가의 경우는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친환경 목재생산 :  $5,624\text{ha}^1 \times 20\%^2 \times 200\text{백만원}^3 \times 50\%^4 = 1,125\text{백만원}$
- 주. 1) 최근 3년간 연평균 벌채 면적 : 5,624ha  
2) 추가 산림 잔존 면적율 : 20%  
3) 산주가 1ha 벌채 시 통상 얻게 되는 수입 : 200백만원  
4) 보조율 50%(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산림청

## 나. 분석의견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통해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나, 현재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성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p>3)</sup> 및 시행령<sup>4)</sup>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벌채방법·벌채량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벌채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5ha이상으로 벌채할 경우 산림을 10% 남기도록 규정하면서, 잔존 산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헌법」 제23조제3항<sup>5)</sup>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을 통해 산주에게 산림 잔존면적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뒷받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6)</sup>이 발의(2021.12.1.)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 개정안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64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가. 현황

묘목생산 사업은 국가 조립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종자와 묘목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2,500만원 증액된 23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내역사업인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sup>1)</sup> 사업은 온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통해 고품질의 묘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원 증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묘목 생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묘목생산	24,554	21,521	21,521	23,446	1,925	8.9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5,509	5,900	5,900	6,200	300	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산림청

스마트 양묘시스템은 현재 경기 양평, 강원 정선 2개소에 구축되어 있고, 2022.12월에 경북 봉화 1개소를 추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 예산안에는 충북 음성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비용이 반영되었다.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 6,200백만원
  - 1개소 구축 : 1개소×5,000백만원 = 5,000백만원
  - 시설운영비 : 4개소×300백만원 = 1,200백만원

자료: 산림청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533-300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2023년도에 구축하는 스마트 양묘시스템은 연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시설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어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충북 음성에 구축되는 스마트 양묘시스템은 2022년도 현재 구축 중인 경북 봉화의 구축 진행정도에 비추어볼 때, 2023년도 연말에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운영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정상 운영이 가능한 3개소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시스템에도 시설운영비(3억원)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현황]

지역	소관 지방산림청	설계용역 계약일	공사 착공일	공사 준공일
경기 양평	북부	'19.4.11.	'19.6.26.	'19.11.17.
강원 정선	동부	'20.2.20.	'21.3.18.	'21.11.12.
경북 봉화	남부	'21.7.21.	'22.6.15.	'22.12.15.(예정)
충북 음성	중부	'22.5.25.	'23 예정	-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설 운영비 중 재료비의 비중(61%)이 높는데,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료비 외에도 인건비·공공요금 등이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3년 구축 양묘시스템의 공사 준공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설운영비 집행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



## 1 현황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8,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억 4,400만원(2.7%) 증가하였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300	5,244	5,244	5,388	144	2.7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8,20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76억 6,900만원(8.2%) 증가하였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10,227	1,685,687	1,682,905	1,820,574	137,669	8.2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함정·차량 등 장비의 신규증강·노후대체 및 정비 등 해상경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2022년 4,361억원 → 2023년 5,036억원), ② 해양치안 수호를 위한 범죄수사활동 및 국제적 협력업무 수행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2년 159억원 → 2023년 175억원), ③ 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정 건조 및 사고대응 장비·자재 확보 예산이 확대되었다(2022년 215억원 → 2023년 320억원). ④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대형헬기 1대 신규도입 및 노후 카모프 헬기 2대 대체도입, 연안구조정 5척 신규도입과 구조대 구조정 2척 대체건조 예산 등 구조·안전 분야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⑤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과 AI경비지원시스템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다(2022년 656억원 → 2023년 748억원).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도선 현대화 사업은 선정된 선박 중 대출심사 부적격 등으로 대체건조를 중도 포기하는 선박이 발생하여 이차보전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지원방식의 변경 또는 특례보증제도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서귀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센터는 2023년도 9월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를 현재 운영 중인 센터와 동일하게 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경찰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76억 6,000만원 규모이다.

모두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양경찰 위성 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위성을 통해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유기적으로 수집·활용하는 사업이고, ‘가상융합 기술 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R&D)’ 사업은 행정 안전부와 공동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해양경찰 및 재난안전 종사자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 기술기준 개발(R&D)’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품질을 위한 안전인증 기술 기준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도입 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해상 여건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해양사고에 대한 방제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R&D)	2,710
	가상융합기술기반재난안전대응교육훈련플랫폼기술개발(R&D)	1,850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1,700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R&D)	1,400
합 계		7,660

자료: 해양경찰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치안지원인력운영, 해양안전시스템 구축 관리(정보화),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R&D), 방제정 건조, 인재선발양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① 치안지원인력운영 사업은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서에 청사방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해양안전시스템 구축 관리(정보화) 사업은 해상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 및 조난자 위치발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③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R&D) 사업은 표류경로 예측 기술, 원격탐지기술 등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적용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④ 방제정 건조 사업은 건조 중인 4척의 방제정 계속사업비 및 방제정 1척 신규도입 예산이 반영되었고, ⑤ 인재선발양성지원 사업은 교육훈련 지원 예산 증액 및 자격장 안전시설·장비 보강 예산이 신규반영 되었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치안지원인력운영	2,029	2,029	12,741	10,712	527.9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834	834	2,732	1,898	227.6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R&D)	2,150	2,150	4,556	2,406	111.9
	방제정건조	15,300	15,300	25,689	10,389	67.9
	인재선발양성지원	1,752	1,752	2,839	1,087	62.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경찰청

## 가. 현 황

유도선 현대화 사업<sup>1)</sup>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sup>2)</sup>에서 유·도선<sup>3)</sup> 선령을 제한 (2016.2.4. 시행)함에 따라 일정 선령에 도달한 유·도선을 새롭게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조 용자액의 이자액 일부(2.5%)를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 증액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유도선 현대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5,001	4,979	4,943	4,732	△247	△5.0
유도선 현대화	85	171	171	283	112	65.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경찰청

유도선 현대화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2022년 선정된 선박 9척 및 2023년도 신규 지원 10척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351)

1) 코드: 일반회계 3001-300의 내역사업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선(遊船) : 뱃놀이를 할 때 타는 배

도선(渡船) :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

[2023년도 유도선 현대화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 분	산출내역
2020~2022 선정 선박	▪ 9척 누적분 183백만원
2023 신규 선정 선박	▪ 신규 10척×용자 16,100백만원×이차보전 2.5%×0.5(6개월) ×0.5(공정도에 따른 분할대출) = 100백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 나. 분석의견

유도선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선박 중 중도 포기하는 선박이 발생하여 이차보전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원방식의 변경 또는 특례보증제도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도선 현대화 사업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32척이 사업을 신청하여 31척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28척이 사업을 포기하여 3척이 최종 선정되었고, 2021년도에는 12척이 사업을 신청하여서 12척 모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9척이 사업을 포기하여 3척이 최종 선정되었다.

[유도선 현대화 사업 대상 선박 선정 현황]

(단위: 척, %)

공고	신청	선정 (A)	포기	사업진행 (B)	선정률 (B/A)
2020년	1차	20	19	1	5.6
	2차	10	10	2	20.0
	3차	2	2	-	-
	소계	32	31	28	9.7
2021년	1차	6	6	1	16.7
	2차	6	6	2	33.3
	소계	12	12	3	25.0
2022년	1차	22	5	2	40.0
	2차	16	15	-	-
	소계	38	20	2	40.0

자료: 해양경찰청

그 결과 2020년도에는 예산액 6억 1,100만원 중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되었고, 2021년도에는 예산액 1억 7,100만원 중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49.7%)되어 집행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다.<sup>4)</sup>

한편, 2022년도 9월말 기준 사업대상자를 2차 모집하여 20척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은행권 대출이 진행된 선박은 2척인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사업 포기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 대출 부적격 판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영세한 업체의 대출 관련 서류 미비, 신용도 악화, 담보능력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불황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시행령은 노후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령기준을 신설하였고 기 면허 보유 사업자는 해당 법령 시행 후 7년(2023.2.4.)까지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하였는데, 유예기간 도래시 유도선 사업 면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선박이 55척(2023.2.4.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선령 규정에 미달할 경우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sup>5)6)</sup>

더욱이,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에서도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해양경찰청은 사업에 선정된 선박들이 사업 참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특례보증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 선정 시부터 금융기관 대출 요건을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중도 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sup>7)</sup>

4) [2020~2022.8월 유도선 현대화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	611	32	579	5.2
2021	171	85	86	49.7
2022.8월	171	92	-	53.8

자료: 해양경찰청

5) 다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더 유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1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 8. 제4조의2 제1항제1호 따른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의를 통해 2022.7월부터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담보능력이 부족한 유도선 사업자들에게 노후 유·도선 건조비의 최대 80%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가. 현황

VTS 구축운영 사업<sup>1)</sup>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운수송환경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항만·연안 해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7억 9,000만원 감액된 22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VTS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VTS구축운영	32,261	36,583	36,547	22,757	△13,790	△37.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93년 포항항을 시작으로 현재 20개의 VT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군산연안, 목포연안 VTS센터 2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제주연안, 서귀포 연안 VTS센터 2개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와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 26억 9,400만원과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 구축 : 2,694백만원
  - 공사비 : 2,405백만원 / 감리비 : 289백만원
- 제주·서귀포 연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 254백만원
  - 일반수용비 : 2개소 × 21백만원 = 4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2개소 × 62백만원 = 12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2개소 × 44백만원 = 88백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나. 분석의견**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는 2023년도 9월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를 현재 운영 중인 VTS센터와 동일하게 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는 2020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건축은 2022년 9월에 준공되었고, 2023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는 2023년도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시설장비유지비가 4개월분으로 반영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VTS센터와 동일하게 연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산·목포 연안 및 제주·서귀포 연안 VTS 구축 현황]

센터	설계용역 계약일	건축		시스템	
		착공일	준공일	착공일	준공일
군산·목포 연안	'18.6.8	'19.10.10	'22.3.18	'20.4.1	'22.10.25 (예정)
제주·서귀포 연안	'20.3.30	'21.6.28	'22.9.25	'21.7.20	'23.9.8 (예정)

자료: 해양경찰청

2022년도에 VTS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군산·목포 연안 VTS센터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동 센터 또한 2022년도 3월에 건축이 완공된 뒤 시스템은 10월에 구축 완료될 예정인데 건물 이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자산취득비 등 비목은 집행되었지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별도로 집행된 바 없었다.2)

따라서 제주·서귀포 연안 VTS센터에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스템 구축 계획과 비교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목포·군산 연안 VTS센터 유지관련 예산 집행 현황(2022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센터	비목	22년 배정예산	22년 집행액
군산·목포 연안	일반수용비	12	9
	공공요금및제세	336	252
	자산취득비	260	129

자료: 해양경찰청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094-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